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허영의원·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38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총괄 검토 ····· 3

Ⅳ.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 9

1. 자치권 강화(제2편제3장) ····· 9

2. 자치재정(제2편제4장) ····· 21

3.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제3편제2장제1절) ····· 24

4.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제3편제2장제2절) ····· 75

5. 교육 환경의 조성(제3편제3장) ····· 81

6.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제4편제1장) ····· 119

7.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제4편제2장) ····· 208

8.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진흥(제4편제4장) ····· 225

9. 생활환경 개선 및 경제진흥 등(제4편제5장) ····· 253

10. 벌칙(제6편) ····· 343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영의원·한기호의원 등 28인

2. 제　안　일 : 2026. 4. 6.

3. 회　부　일 : 2026. 4. 7.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초광역권 통합을 위한 이른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들이 국회에서 심사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초광역통합·연합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

특히 초광역권 중심의 거대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대규모 국세 이양과 규제 완화, 행정 권한의 대폭 확대가 병행되는 가운데,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체제'의 한 축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역 경쟁력 약화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의 소외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의료·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상 기업 유치,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재정지원 등 주요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와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첨단의료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Ⅲ.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총괄 검토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초광역권 경쟁에 대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함)가 지역 여건과 전략산업에 맞는 자치권 및 재정·산업·정주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강원자치도를 미래산업, 청정에너지, 해양·관광 및 교육 분야가 결합된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첫째, 주민자치회에 사무국 또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의회 입법과정 및 도지사·도교육감의 정책에 관한 도민 모니터링과 도민모니터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주민자치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확충하고 도정 과정에서의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둘째, 혁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이주 지원, 지역인재 채용 및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유치 등에 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아울러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및 등록 생활인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이전과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정주 기반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셋째,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일부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세율을 일정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관리 및 세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강원자치도의 재정·규제 운용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넷째,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기반 구축,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특화단지 조성, 수소산업의 육성 및 재생·분산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등에 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또한 노후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지방세 감면 근거 등을 마련하여 바이오·헬스·수소·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다섯째, 인공지능 클러스터와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시설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및 데이터뱅크, 인공지능·반도체 도시실증지구 및 인공지능·에너지 융합특화산업도시 등에 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인공지능·데이터·반도체·에너지 산업이 융합된 국가 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하려는 것임.

여섯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미래자동차부품산업, 도심항공교통, 항공우주산업, 우주산업 및 국방산업의 특화단지 조성과 기반시설·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반도체산업특화단지의 지정 및 전력·용수·폐기물·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을 지원하여 미래모빌리티·항공우주·국방·반도체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려는 것임.

일곱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대상 확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수산발전기금 및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구역, 어항, 섬 지역, 연안관리, 해양탄소흡수원, 해상풍력 및 수상형태양광 등과 관련한 특례를 두어 농어촌·산촌·수산·해양경제를 연계하여 육성하려는 것임.

여덟째, 외국인 유학생 및 첨단지식산업 인력에 대한 체류·취업·창업 특례,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 특례, 국제학교 제도, 지역전략산업 연계 직업교육 및 지역산업혁신캠퍼스 등에 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국제화·고용을 연계한 지역 인재정주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아홉째, 선박등록특구, 투자금융주식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 기회발전특구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지능정보화 선도사업거점지구, 산업연대협력체, 중소기업 공동복지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지역 내 투자와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열째, 돌봄특구 지정 및 특별회계 설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운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혁신클러

스터 조성 등에 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돌봄·주거·복지·푸드테크 등 생활서비스와 지역산업을 연계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총괄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초광역권 경쟁에 대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자치권·재정·산업·정주 여건 관련 특례를 폭넓게 부여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강원자치도가 바이오·헬스, 청정에너지, 인공지능·반도체, 미래모빌리티·항공우주, 농산어촌·해양 및 교육·국제화 분야에서 지역혁신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동일·유사 특례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음.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및 초광역권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강원자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 발전기반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강원자치도는 기존 강원도를 기반으로 설치된 특별자치도인 반면, 통합특별시는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되는 지방자

치단체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통합특별시 등에 관한 특례를 그대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강원자치도의 지역적·산업적 여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주민자치·생활인구·공공기관 이전, 재정·세제, 바이오·에너지, 인공지능·반도체·미래모빌리티, 농산어촌·수산·해양, 교육·국제화, 투자·금융·중소기업, 돌봄·주거·푸드테크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특례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다른 특별자치도 및 통합특별시 관련 법률안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는 조항은 지역 간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다만 일부 조항은 개별법상 사무배분 체계, 지방세 및 공유재산 특례 체계, 국가 전략산업 및 에너지·환경 정책의 추진체계 및 일반 시·도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전략산업 육성,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 수산·해양 및 돌봄·주거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특례의 정책적 필요성과 별도로 전체 재정소요, 지원의 우선순위 및 다른 권역과 일반 시·도에 미칠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강원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특화발전 기반 조성이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개별 특례는 관계 법령 체계, 국가재정 여건, 전국적 기준의 유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역시 지역발전 특례의 발굴·부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별 특례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반영하고, 조직·재정 특례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종합하면,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자치권과 지역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제도적 격차 또는 역차별 우려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음. 다만 각 특례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강원자치도의 특수한 여건에 비추어 수용할 필요가 있는 특례와 개별법·국가정책 체계와의 조정이 필요한 특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특례의 범위와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관계 부처 협의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Ⅳ.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자치권 강화(제2편제3장)

(1) 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제14조의2 신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 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제1항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는 현행 법체계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1)]

1) 2026.4.14.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는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가 신설되었음(시행일: 2026.10.16.)

(2) 도민 모니터링(제14조의3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도민이 의정·도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그 구체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함으로써 도민 참여와 견제 기능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3(도민 모니터링) ① 강원자치도의 도민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의 입법과정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의 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과정 등을 감시·견제하기 위하여 그 활동 전반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하여 도민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과 제2항의 도민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시민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하여 시민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과 제2항의 시민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도의회 입법과정과 도지사·도교육감 정책 과정에 대한 도민의 감시·견제와 도민모니터단 구성·운영을 제도화하여 도민 참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다만, 제4항과 제5항은 동일한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다시 '시민'을 주체로 하는 시민모니터단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도민을 주체로 한 도민모니터단 규정(제1항~제3항)과 내용상 중복될 뿐 아니라, 현행법

및 조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민' 개념과의 관계에 관하여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모니터링 제도의 구체적 설계는 도조례에서 도민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4항과 제5항은 삭제하는 것이 입법체계와 용어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행정안전부는 도민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개정안 제4항과 제5항은 제2항 및 제3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제17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원자치도의 혁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자치도 관할구역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강원자치도의 혁신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현 행	개 정 안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말한다) 개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 관할구역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 혁신도시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개발,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이러한 일반적 지원·책무 규정을 강원자치도에 특화하여 확인·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같이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과정에서 통합 또는 자치단체 지위 변화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둔 입법례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2]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과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특례 규정은 입법 형평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혁신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말한다) 개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에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4)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제17조의3 신설)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자치도를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지사의 공유재산 수의매각 특례, 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 지원, 강원자치도 인재채용 비율 상향 적용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3(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강원자치도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인재채용 비율을

현 행	개 정 안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현행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3]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강원자치도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제1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할 때 강원자치도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선정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정책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주특별법 및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시·도를 법률상 우선 고려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4조(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제3항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법 제47조[4]에도 불구하고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혁신도시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5]는 이미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사비용, 이주수당,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제도와 충돌하기보다는 그 범위 내에서 운용 가능한 사항으로 보임.

따라서 "제47조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상위법과의 충돌 또는 예외를 전제하는 문언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며, "제47조에 따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와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제4항은 혁신도시법 제29조의2[6]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인

---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이주직원에 대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 혁신도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등의 장이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별도로 정하여”라는 문언만으로는 상향된 채용비율을 정하는 주체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인지, 도지사인지, 채용비율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도조례로 정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상향 비율의 결정 주체와 기준·절차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수의매각 특례를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5)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제17조의4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7]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4(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8]를 준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공공기관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경제 기반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보임.

공유재산 수의매각을 통하여 공공기관 이전 또는 신설 시 부지 확보

---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 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수의매각 특례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임.

다만, 제17조의4는 안 제17조의3제2항과 적용대상 및 법률효과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그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17조의3제2항은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제17조의4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동일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동일한 법률효과인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가운데 법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으로, 강원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안 제17조의3제2항의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제17조의4는 제17조의3제2항에 비하여 추가적인 수의매각 권한이나 별도의 우대효과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17조의4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수의계약 특례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6)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제17조의5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에 장기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등록자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등록강요 금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5(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강원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강원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등록할 수 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현재 주민등록지 5. 통근·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사유 6.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강원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업무·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강원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9]는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업무·정기적 교류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과 일정한 외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주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을 보완하여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개정안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 제66조의3[10]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의 입법례를 강원자치도에 적용하려는 것임.

장기 체류·방문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지역 정착 및 지속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생활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등록할 수 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현재 주민등록지
5. 통근·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사유
6.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업무·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치재정(제2편제4장)

(1)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제20조의2 신설)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일반재산의 대부·매각 및 교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일부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강원자치도의 지역 여건과 정책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60조에 개정안과 동일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11]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향후 시행 과정에서 마련될 세부 운영기준 등을 참고하여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례 부여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 위임 특례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항이며,[12]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

시·도의 통합에 따른 행정체계 변동이 있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달리 행정체계 변동이 없는 강원에 동일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의 통일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제20조의3 신설)

개정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도세의 표준세율 및 중과기준세율에 대하여, 도조례로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3(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세 세율은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34조, 제1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일부 세목에 한하여 통상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을 허용하고 있음.[13)]

개정안은 일반적인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세율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지방세법」 제13조),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제13조의2), 같은 법 제15조 및 제34조에 따른 세율, 화재위험 건축물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제1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61조[14)]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강원자치도가 지역의 산업구조, 투자 여건 및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도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세율 조정 특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지방세율은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재원과 납세자의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세율 조정권의 확대는 재정수입 감소, 납세자 간 형평성 및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경쟁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3) **「지방세법」**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1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세 세율은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34조, 제1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3.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제3편제2장제1절)

(1)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제32조의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립·운영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2(강원과학기술원 설립)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는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임.

따라서 동 조항은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관련 계획의 추진 근거로 볼 수 있으나, 과학기술원의 설립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및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의 과학기술원이 각각의 설립 근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과학기술원은 고등교육기관이면서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으로서, 설립 목적·기능·운영 주체·재원분담 및 기존 대학·연구기관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별 지역 특별법에서 도지사의 설립계획 수립 근거를 우선 마련하기보다는, 국가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 정책과의 관계, 지역의 산업·연구개발 수요 및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원 설립은 국가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추가 설립 필요성과 함께 타 지역과의 형평성 우려, 기존 지역대학과의 관계, 대규모 재정소요 등 종합적·심층적인 검토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지역대학과의 공감대 형성 및 교육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사전검토·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률 조항 신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2) 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제34조의2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실증·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활용, 표준화, 플랫폼 구축 등의 업무를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 그린바이오 정책 및 관련 데이터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며, 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2(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실증·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활용을 함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산업임.[15]

개정안은 강원자치도가 그린바이오 연구·실증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데이터 표준화, 수집·공유·거래, 플랫폼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정책·표준과의 정합성을 전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지역 단위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조문의 구조 및 내용이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05조와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16] 수용 가능성 있는 특례로 보임.

---

15)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생산·판매·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
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5조(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실증·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3)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34조의3 신설)

개정안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17]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첨단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는 경우, 관련 예산 집행과 인·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활용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④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3(첨단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 인·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첨단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세포·유전자치료제, 디지털헬스케어 등 고도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을 다루는 분야로, 임상시험 승인과 품목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강원 내 첨단바이오헬스 클러스터에 대하여 예산 집행 및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어,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하에 입지·규제·지원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첨단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해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는 수준인 것과 달리,[18]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인·허가 등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측면이 있는바,

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5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바이오 혁신 신약·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첨단바이오헬스산업

이러한 권한 이양 특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첨단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관한 국가정책의 유연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유사 특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제34조의4 신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소저장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4(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강원자치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소저장소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 43조제3항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9)]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③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안은 수소저장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구조 및 설치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수소 생산·저장·활용 기반시설의 확충 필요성 및 강원자치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소저장소의 입지·설치기준에 관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 국토계획법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법 특례를 통하여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정권을 부여할 필요성과 적정한 특례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수소저장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동시에 수소·고압가스의 저장과 관련된 시설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른 안전규제가 적용되는 시설임. 구조 및 설치기준은 시설 안전성과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인바,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을 허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유지할 필요성보다 큰지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제34조의5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강원자치도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분산에너지사업 및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5(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강원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도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③ 도지사는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에너지 자립도시는 재생에너지[20]와 분산에너지[21]의 활용을 확대하여 지역 내 에너지의 생산·소비를 연계하고, 안정적 전력수급, 탄소중립 및 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정책 개념으로 볼 수 있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보조·융자 및 관련 기금의 투자·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며,[2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도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의 기금·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적 국가지원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23]

개정안은 이러한 일반적 지원 근거에 더하여 강원자치도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국가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

---

20) 재생에너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21) 분산에너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

2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7조(보조·융자)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효율성·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대와 분산에너지·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지역산업 및 도시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도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과 분산에너지사업·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등을 연계한 유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24]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제34조의6 신설)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46조의6[25]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대

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8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도시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③ 통합특별시장은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여,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국가는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산업입지법 제46조의6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산업입지법과 배치되는 규정이라기보다, 강원자치도 내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토지 매입비에 대한 국고 지원 가능성을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임대전용산업단지[26]는 장기·저가의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기업의 초기 입지비용을 완화하고, 지역전략산업 및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 매입비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음.

---

③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임대기간 등의 기준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6) 임대전용산업단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조성한 산업단지 중 일부를 장기 임대를 전제로 하는 구역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외국인투자기업·유턴기업 등에게 저렴한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입지비용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유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27] 특별법 간 형평성 및 강원자치도의 산업입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음.

다만 현행 산업입지법에도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토지 매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개정안 역시 국고 지원 여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 제도와 비교한 추가적인 법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제34조의7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부지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7(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① 도지

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5조(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국가는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사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하여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의 부지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경기초시설을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 ② 도지사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단지 지정권자·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업종별 공장 배치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와 설치가 제한되거나 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현행 산업입지 관련 지침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의 기반시설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및 설치·운영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기반시설로 명확히 의제함으로써,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제한이나 용도·시설 관련 규정으로 인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는 산업단지의 안정적 운영, 입주기업의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및 환경관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유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28]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의 적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는 것은 특별법 간 형평성 및 산업단지 환경기반 확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소방청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 설치·운영 단계에서 소방용수·진입로·이격거리·소방시설 등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 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의 의견청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6조(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하여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등을 말한다) 안의 부지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입주업종 제한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경기초시설을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8)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제34조의8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구축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의 우선처리 또는 통합심의 및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8(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원자치도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우선하여 처리하거나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현행 산업집적법 제33조[29]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과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정에서 준공 전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준공 후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입주업종,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임.

개정안 제2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의 설치·구축에 필요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우선 처리하거나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전환 사업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내용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30]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로서 검토할 수 있음.

다만 제3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0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우선하여 처리하거나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같은 법,「조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31] 따라서 안 제3항과 같이 개별법에 지방세 감면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은 독자적인 감면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으며, 개별법만으로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되어 입법체계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면 감면 대상·요건·범위 등을 구체화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도 지방세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제3항의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한편 소방청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공장 및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노후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성, 전기설비 화재, 설비 밀집 및 소방차 진입 장애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허가 절차의 우선처리 또는 통합심의 과정에서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 여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의 의견청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31)**「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9) 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제34조의9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소재 벤처기업·창업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의 투자·융자·보증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9(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 융자제도 우대 및 보증제도 수립·운용 3.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및 정책목적형 펀드는 성장성이 높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운용되는 제도로,

개정안은 국가가 이러한 조합 및 정책목적형 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보증제도의 우대 운영,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국가 R&D 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화·후속투자 지원 등을 전북지역 벤처기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동일한 특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32]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벤처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선행 입법례 및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10)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제34조의10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거점·기반시설 및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클러스터 내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및 NPU 등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시설의 구축·확충·고도화, 운영비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을 지원하며,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10(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클러스터(이하 “클러스

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3조(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 융자제도 우대 및 보증제도 수립·운용
3.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

현 행	개 정 안
	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클러스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2. NPU 등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시설 및 연계 시설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시책 추진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시 산업의 지역적 집적화와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인공지능 정책의 일반적 지원체계에 더하여,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컴퓨팅 기반시설·재생에너지를 결합한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와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통합특별시장이 연구개발 거점·기반시설·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가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시설의 구축·확충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도록 하는 유사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음.[33]

이러한 선행 입법례를 고려하면,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한 특례를 둘 필요성은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다만 제2항은 국가가 클러스터 내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및 NPU 등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시설의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의 입지와 투자 규모는 전력·용수·통신망 등 기반여건, 수요기업·연구기관의 집적도, 기술 변화 및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이미 동일한 의무규정이 마련된 상황에

---

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2조(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클러스터 내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2.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 기반 시설 및 연계 시설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서, 이를 다른 특별자치도에 확대할 경우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의 지역별 배치와 투자 우선순위를 개별 특별법이 선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34]

따라서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제2항 전단의 국가 직접 수행 또는 지원 의무는 재량규정으로 조정하여 국가 인공지능 정책 및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 조성(제34조의11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강원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및 활용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와 교통·물류·정보통신 기반시설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11(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강원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

34)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324호)에 동일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강원자치도를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상용화 지원 및 권역별 인공지능 선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음.[35]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 인공지능 정책과 연계하여 강원자치도를 인공지능·에너지 융합 기반의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고,[36] 전북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도 동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37]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의 근거를 마련

35) 머니투데이, “과기정통부, 지역AX에 3.1조 투입…‘4개 권역 AI 혁신거점으로’”, 2025.12.11. https://www.mt.co.kr/tech/2025/12/11/2025121110314681665

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3조(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통합특별시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통합특별시 전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37)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324호)에 동일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

하는 것은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다만 제1항 후단은 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역주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대상·방식·규모는 국가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교육정책, 재정 여건 및 지역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법에 국가의 인공지능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 지원 의무가 규정될 경우,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지원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같이 해당 국가 지원 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34조의12 신설)

개정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제1항[38]에 따라 도지사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3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국가가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전담기관 지정, 데이터센터 기반시설의 선제적 구축 및 데이터센터 구축비 지원 등의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12(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도지사가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도지사가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용수 등 기반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일반적 제도에 더하여, 강원자치도가 조성하는 인공지능집적단지에 대한 국가의 지정·전담기관 지정·재정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역 인공지능 산업의 집적 및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 전략과의 연계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전담기관 지원 등에 관한 유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39]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항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선제 구축 특례와 관련하여, 특히 용수공급시설은 대규모 초기 투자와 장기 운영이 수반되는 공공 인프라로서 정확한 수요 산정 없이 구축할 경우 시설의 과다·과소 공급, 재정 비효율 및 유휴시설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

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4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용수 등 기반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객관적 수요 예측에 기초한 단계적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5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3) 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34조의1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실증지구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이라 한다)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13(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에서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을 실증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현행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수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40]

개정안은 도지사가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실증지구를 우선 지정하고, 해당 지구가 규제자유특구법상 절차를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도록 한 것임. 따라서 도지사의 실증지구 지정만으로 규제특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특구계획 승인 및 지정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른 지정권한·심사절차 또는 규제특례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라기보다, 강원자치도의 인공지능·반도체 실증지구 정책과 현행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연계하는 선언적·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4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는 제7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라 한다)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하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3.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다만 현행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라 강원자치도지사는 이미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실증지구 지정 특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추진에 어떠한 추가적 법률효과를 갖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제34조의14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가 강원자치도 내 특정 지역에서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운영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활용에 관한 관계 기관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14(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자치도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인공지능데이터뱅크

현 행	개 정 안
	(인공지능 학습·추론·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결합·관리·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검증용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 2.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처리 및 관리 3. 인공지능 기술개발·실증·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지원 4. 인공지능데이터의 품질 관리,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지원 ④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협력 방식으로 운영한다. ⑤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정제·결합·비식별화·품질관리 및 제공에는 전문인력·기술·재원과 함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국가가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활용부터 기술개발·실증·사업화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1항은 지역의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제2항은 국가가 제1항의 지역 내에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법문상 인공지능 학습·추론·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결합·관리·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으로 정의되어 있음.

따라서 이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 자체라기보다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체계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별도의 대규모 물리적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제1항의 지역 내에” 데이터뱅크를 구축하도록 한 문언은 강원자치도 내에 독자적인 데이터 관리·활용 거점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유사한 인공지능데이터뱅크 특례가 마련되어 있고,[41] 전북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취지의

조문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42] 각 지역별 데이터뱅크의 별도 구축 또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인프라의 지역 배치에 관한 기대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데이터뱅크의 “지역 내 구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활용 및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가 이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개정안 제4항도 같은 법과의 정합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6항은 중복 규정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5) 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제34조의15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우주항공·바이오·헬스·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지정·연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6조(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42)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324호)에 동일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신청과 국가 및 강원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15(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② 도지사는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제2항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조정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현 행	개 정 안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및 방위산업 등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고시되어 있음.[43)]

그런데 개정안 제1항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상정하면서도, 제2항제1호에서는 별도의 정의 없이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연구기관·대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산업”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특히 개정안에서 예시한 모빌리티 및 문화 산업은 현행 고시상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현행 법체계상 개념과 혼동될 소지가 있음.

한편, 인공지능·에너지 기반의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전남광주통합

43)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7. 10.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15호)

특별법에 동일한 입법례가 있고,[44] 전북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45]에도 같은 내용의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 특별법 간 체계 정합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이러한 특례가 전남광주, 강원, 전북, 제주에 공통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국가 전략산업 정책의 중립성 및 다른 일반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7조(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2항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조정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5)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324호)에 동일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

(16)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34조의16 신설)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제7조[46]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관할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강원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지정·변경·해제 절차를 도조례에 위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16(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강원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상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특례, 유상 여객·화물 운송 허용 등 각종 규제특례가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구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하게[47] 강원자치도에도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과 운영근거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지역 수요에 맞는 자율주행 실증환경을 조성하고 전남광주와의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시범운행지구는 교통·안전 기준 및 운송 관련 규제 완화를 수반하는 전국 단위 제도인 점을 고려할 때, 도지사에게 지정권한을 이양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의 입법례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등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함께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5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바람직하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전국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강원자치도 내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변경·해제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제34조의17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20조[48]에 따라 강원자치도 내 특정 지역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지정된 특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4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지구·지역 등
(이하 생략)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17(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할 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20조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이 해당 산업의 집적 정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 등으로의 전환 수요, 관련 기업·인력·인프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지·지구·지역을 지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동일한 구조로 통합특별시에 대한 우선 지정 및 국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49] 전북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바,[50]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례를 강원자치도에 적용하려는 것임.

---

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0)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324호)에 동일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

개정안의 입법화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우선 지정과 국가 지원을 통해 강원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자동차 전환과 부품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형평성과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는 법률상 모든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제도인바, 전남광주·강원·전북·제주에 공통적으로 “특화단지 등 우선 지정” 규정을 두는 방식이 일반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산업입지·지역산업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18)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18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 제8조[51]에 따른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

5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범운용구역의 신청·지정·변경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고,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운영 등에 대해 국가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18(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도심항공교통법은 “시범운용구역”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운항·인프라·안전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실증·검증하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시범운용구역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57조[52]와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전북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반영되어 있어,[53] 이러한 입법례를 강원자치도에 적용하려는 것임.

---

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7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3)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324호)에 동일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

이는 도심항공교통법상 지정 절차와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우선 지정’이 아닌 ‘우선 검토’ 의무와 국가의 재량 지원 근거만을 추가로 부여하는 형식인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형평성 및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가의 시범운용구역 지정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 수용 가능성이 있는 입법조치로 보임.

(19)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19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항공우주산업법”) 제8조의2[54]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자치도 관할 우주 국가산업단지 및 우주산업 관련 기업·기관에 대하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도지사에게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지원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5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19(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우주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국가와 협력하여 우주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강원자치도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제2항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근거하여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연구기관·지원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을 정책적으로 지정·지원하는 제도이고,[55] 제3항의 “우주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국가산업단지 개념을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하여 적용하는 산업입지로서, ‘사천 우주

5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항공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우주·항공 산업 집적 국가산업단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됨.

한편, 제3항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바,[56] 개정안은 서로 다른 상위법 체계에 근거한 세 개의 제도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59조[57]와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전북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5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우선 지정, 국가의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도지사의 정책적 역할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강원자치도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산업 관련 생태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

---

56) **「우주개발 진흥법」**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9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우주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우주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특별시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58)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324호)에 동일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

받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등 지역 특별법과의 형평성 및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제1항의 “우선 지정”은 형식상 재량규정이나, 동일한 특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 제주, 강원에 공통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우주항공청의 특화단지 지정 재량이 특정 4개 권역에 사실상 우선 배분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바, 이는 일반 시·도 및 경남 사천 등 기존 우주산업 거점[59]과의 형평성, 우주항공청의 정책적 중립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 우주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우주산업 클러스터(「우주개발 진흥법」 제22조)를 한 조문 안에서 병렬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각 용어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조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개념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우주항공청은 강원자치도가 현재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기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는 차이가 있어 안 제3항 및 제6항의 클러스터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9) 연합뉴스, “사천 우주항공 국가산단 집적화 시동…클러스터 구축 착수”, 2026.03.20.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0146300052

(20)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34조의20 신설)

개정안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60]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20(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는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 금액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60)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60조[61]와 전북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구조로 통합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 시 우선 지정 및 국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62]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례를 강원자치도에도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우선 지정 특례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우주산업 분야 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른 지역특별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우주개발 진흥법」상 우주산업 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제도인바, 전남광주·전북·제주·강원에 공통적으로 “우선 지정” 특례를 두는 방식은 우주항공청의 지정 재량이 특정 4개 권역에 편중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 시·도 및 기존 우주산업 거점과의 형평성, 국가 우주산업 입지정책의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0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2)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324호)에 동일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주체’는 우주항공청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성 주체’를 우주항공청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조성’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63]

(21)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제34조의21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연구회에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지역조직의 설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21(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에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63) 우주항공청은, 투자진흥지구는 우주항공청 및 관련 부처(재경부, 행안부 등),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지역 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현행 과기출연기관법 제4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연구회”로 약칭하고 있으며,[64] 제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65]

개정안은 이러한 일반법상 절차에 더하여,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회의 지역조직 설립을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여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이미 동일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66]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에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 기

6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6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연구기관이 제24조제2항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1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에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조직의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관의 지역조직을 유치·확대함으로써 지역 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76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연구회”는 과기출연기관법 제4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연구회”보다는 “과기출연기관법 제4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같이 서술하는 것이 문언의 명확성과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와 같이 조제목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된 특례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제3편제2장제2절)

(1)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제44조의2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소재 대학에서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우수한 연구경력·실적을 갖추어 도내 연구기관·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거쳐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의2(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 중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한 영주자격의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에서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것 2. 연구경력, 실적 등이 우수할 것 3. 강원자치도에 있는 연구기관·기업 등에 취업 또는 창업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첨단지식산업분야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계속 적용여부에 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현행「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은 영주자격자에게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영주자격 취득을 위해 품행, 생계유지

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에 따른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67]

개정안은 지역 첨단산업에 필요한 석·박사급 외국인 인재의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지역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산업기반을 확충하려는 정책적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영주자격 요건의 완화·면제를 법무부장관이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소재 대학에서의 학위 취득 및 도내 취업·창업을 특례 적용의 핵심 요건으로 삼고 있어, 개인의 능력·공로보다는 특정 지역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영주자격 특례 대상을 설정한다는 차이가 있음.

---

67)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영주자격의 부여와 그 요건의 완화·면제는 외국인의 국내 정주 및 사회통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무이므로, 국익과 공공안전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주자격자는 취업활동 범위 및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고,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음.[68]

따라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영주자격 정책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제44조의3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소재 초·중등학교에서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연계하여 통학구역, 입학전형, 농어촌학교 전·입학 및 특수학교 병설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

68)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의3(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학교 입학 전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특수학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를 병설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시설·설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69]를 참고하여 강원자치도의 교

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0조(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을 위한 교육과정, 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학교 입학 전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학·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를 병설하려는 경우 학교

육 여건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조문의 제명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으로 되어 있으나, 제3항의 농어촌학교 전·입학 특례 및 제4항의 특수학교 병설·분교장 설치 특례는 다문화학생에 한정되지 않는 별개의 교육정책 사항에 해당함. 따라서 다문화교육, 농어촌교육 및 특수교육에 관한 특례를 하나의 조문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문의 제명과 규정 내용 간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4항은 특수학교 병설 또는 특수학교 분교장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문화학생 지원보다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특례로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70조제4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명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제5조의 예외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지역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전반에 대한 특례로서 특수학교의 병설 또는 공립 초등학교·중학교에 특수학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례의 목적·근거 및 적용 범위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의 규모, 시설·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의 입법례와 차이가 있음.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특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예외로 하는 법률 조문, 병설 및 분교장 설치 대상과 그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규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교육 환경의 조성(제3편제3장)

(1)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제45조)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소재 국립·공립·사립 초·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때, 현행 도교육감의 지정에 앞서 국가교육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국가교육위원회와 미리 협의 한 후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자율학교는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며,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70] 현행 강원특별법도 이에

70)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3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따라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도교육감의 자율학교 지정 과정에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이나, 자율학교 지정은 지역의 교육 여건 및 개별 학교의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판단하는 사항임.

국가교육위원회는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이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71] 협의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협의 규정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사전 협의가 자율학교 지정의 전문성·통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의 절차를 둘 법적·제도적 필요성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추가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각호 생략)

7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초·중·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제45조의2 신설)

개정안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도교육감이 학생 선발기준 등을 달리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외국인 학생 및 그 부모에 대하여 사증발급 절차,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 활동범위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의2(초·중·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① 도교육감은 도내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학생의 선발기준 등을 달리하는 특별전형(特別銓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외국인학교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8조의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은 제외한다) 4. 이 법의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은 제외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활동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

현 행	개 정 안
	생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부모에게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학생의 지역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학교의 국제화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학 등 학사관리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별 특성과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사증발급,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체류활동 범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가의 출입국·체류관리 체계 안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관리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증발급과 체류자격 부여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질서, 공공안전 및 국내 활동범위와 직접 관련되는 국가사무이므로, 특정 지역의 학교 입학을 사유로 별도의 체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출입국·체류관리 정책의 통일성 저하가 우려될 수 있음.

외국인 학생의 부모에 대한 장기체류자격 및 활동범위 특례 역시 학생 보호라는 목적을 넘어 국내 취업과 체류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별 특례보다는 현행 법령과 국가 차원의 체류관리 기준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3) 국제학교 설립(제48조의2 ~ 제48조의14 신설)

개정안은 법 제48조의4제1항[72]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글로벌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운영 주체, 설립승인, 교육과정, 입학, 교원 임용, 회계,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종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국제학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글로벌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시·군 2. 국내 법령 또는 외국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8조의4(국제학교 설립계획의 승인) ① 제48조의2제1항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설립계획에 대하여 도교육감

7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4(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설립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5(국제학교의 설립승인 등) ① 제48조의4에 따라 설립계획을 협의 또는 승인받은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설립 및 변경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6(국제학교의 위탁운영 등) ① 제48조의2제1항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②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7(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

현 행	개 정 안
	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제48조의8(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受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전학·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합리적

현 행	개 정 안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8조의9(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은 방법으로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10(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국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현 행	개 정 안
	요청할 수 있다. ⑥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11(국제학교의 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과 해산·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신 설>	제48조의12(「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신 설>	제48조의13(국제학교 학생 선발의 특례 등) ① 국제학교의 장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대상자를 입학시킬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14(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제학교의 장은 국제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또는 수업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방안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학교 관련 조문의 주요 내용》

조 문	주요 내용
제48조의2	글로벌교육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주체를 국가·강원자치도·시·군 및 국내외 법인으로 정함
제48조의3	국제학교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제48조의4	국가·지자체가 설립하는 경우 도교육감과 설립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고, 국내외 법인이 설립하는 경우 도교육감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도록 함
제48조의5	설립계획 협의·승인 후 실제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 도교육감의 설립승인을 받도록 함
제48조의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국내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48조의7	국제학교법인에 설치등기 의무를 부과함
제48조의8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과정·학년도·수업일수·학년제·교과용 도서·학교운영위원회·입학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제48조의9	학생 징계, 학교생활기록 및 학생 자료 제공 등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함
제48조의10	교원 자격, 교직원 정원·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48조의11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도록 하고, 학교회계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
제48조의12	국제학교의 지도·감독, 재정지원,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함
제48조의13	도조례로 정하는 특례대상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함
제48조의14	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수업료 감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의 국제학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교육과정·입학방법·수업료·학교운영 등에 관한 폭넓은 자율성을 인정하는 예외적 학교유형임.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제도를 강원자치도의 글로벌 교육도시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 제도상 국제학교와 유사한 학교유형으로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그 설립 목적, 설립주체 및 적용 법령 등에서 차이가 있음.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비교》

구분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주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설립 목적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및 국제화 교육 수요 대응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 등의 교육
설립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 법인	외국에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외국인, 비영리 외국법인 또는 국내 학교법인
내국인 입학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범위에서 가능	외국인 자녀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
교육·운영	일반 교육법령의 적용을 폭넓게 배제하고 교육과정·입학·수업료 등에 자율성 부여	외국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설립기준·승인 및 지도·감독 체계 적용	「초·중등교육법」 상 각종 학교로서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 적용

외국교육기관은 외국학교법인[73]이 설립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경제자유구역[74]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어 왔음.

한편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강원특별법 제48조의7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유치원·초·중등학교 또는 고등교육기관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비율 범위에서는 내국인의 입학도 허용하고 있음.[75]

이와 같이 강원특별법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통하여 국제교육 수요와 외국인 정주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의 국제학교는 외국학교법인으로 설립주체를 한정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달리 국내외 법인에 폭넓은 설립자격을 인정하고, 영리법인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교육법령의 적용을 광범위하게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 예외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임.

---

73) 외국학교법인 : 외국에서 유아·초·중등 또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74) 송도의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그 명칭과 달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에 해당함.

7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10.22. 시행)
제48조의7(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러한 국제학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이라는 정책적 배경에서 도입된 것으로,[76] 내국인 학생도 외국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교육과정·입학·수업료 등에 관한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이를 제주 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특정 지역의 국제교육 수요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국가 교육정책의 통일성, 다른 지역과의 교육기회 형평성, 공교육의 책무성, 교육격차 및 교육 과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강원자치도에는 국제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 특례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외국교육기관 제도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구체적 교육수요가 존재하는지, 국제학교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특례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학교 설립 확대는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 지정”에 따라 추진된 제주영어국제도시 조성 국가정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유지하여 국가 차원의 제도적 안정성 및 지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76) 2026년 5월 기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는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Jeju),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 등 4개 국제학교가 설립되어 있음.

(4)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제48조의15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강원자치도가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주거·교육·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15(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①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하여 주거, 교육, 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77]를 준용하여 지역산업·인재양성·정주여건을 연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5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하여 주거·교육·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48조의16 신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운영 및 연계 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16(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의 특화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내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역 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운영에 관한

현 행	개 정 안
	특례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특화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교육감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자치도 관할 구역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교육·연구 복합시설 및 캠퍼스(이하 “지역산업혁신 캠퍼스”라 한다)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운영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학교 특례 운영 요청, 대학 및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78]를 참고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직

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2조(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우주항공,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의 특화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특화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교육·

업계고 교육, 고등교육 및 산업현장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79]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하여 산업계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80]

다만, 개정안은 학교 지정·운영 특례의 내용, 권한 및 절차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특례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1항과 제3항은 모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 특례의 대상과 요청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연구 복합시설 및 캠퍼스(이하 "지역산업혁신 캠퍼스"라 한다)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운영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의 적용 요청,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80)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1항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특례를, 제3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특례 요청과 교육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1항의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명칭이므로,[81] 제1항과 제3항의 대상 학교는 상당 부분 중첩됨.

이에 따라 제1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에 관한 특례 요청으로 한정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요청과 교육부장관의 승인 절차는 제3항에 일원화하는 등 지정 특례와 운영 특례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2항은 도지사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 도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고시 권한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에게 있고, 국립 고등학교의 경우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음.[82]

---

81)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법령상 명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지만, 독일의 마이스터 자격을 모티브로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마이스터고등학교라 일컫는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따라서 도지사가 해당 학교를 직접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2항은 현행 학교 지정권한 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이 도지사에게 지정권한을 새로 부여하려는 것인지, 또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지역전략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지정기준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제6항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학교 특례 운영 요청, 대학 및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항에도 학교 특례 요청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바, 제1항에 따른 지정 특례 요청의 대상·요건·절차까지 하위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면 위임 범위에 제1항을 포함하는 등 규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현행 교육과정상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이미 일정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으나, 국가교육과정 자체는 특례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이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의 학교 운영 특례 중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한 기준과 내용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83]

---

83) 신설 조항 예시(국가교육위원회)
⑦ 제1항과 제3항의 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 사항 중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한 기준과 내용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러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입장을 고려하면, 조문 제목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표현도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특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지정 및 운영의 특례”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대학 경쟁력 강화(제48조의17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대학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초·중등학교와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17(대학 경쟁력 강화) 강원자치도 내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초·중등 학교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도 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연구와 이에 부수되는 산학협력, 지역사회 연계, 사회봉사 등 다양한 사회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 대학이 유·초·중등학교와 국제 프로그램 기반의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초·중등학교”와의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강원자치도 내 대학이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 학교와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제48조의18 신설)

개정안은 도교육감이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정원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인구 변동, 산업 수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매년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세부 사항은 도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18(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① 도교육감은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정원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인구 변동, 산업 수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현 행	개 정 안
	사항은 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고등학교의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학생수용계획 등 교육감이 정한 기준과 승인 절차에 따라 학교별 모집정원이 운영되고 있는바,[84] 학생 모집정원을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하는 기능은 일정 부분 현행 교육관계 법령 체계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제1항은 새로운 권한을 창설한다기보다,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 모집정원 조정의 정책 방향을 특별법 차원에서 보다 분명히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됨.

아울러 이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학생 배치 및 학교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점에서, 유사 입법례의 취지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85]

---

8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3조(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정원을 정할 때 지역의 인구 변동, 산업 수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학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특히 지역의 인구 변동, 산업 수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 모집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별 학생 수 편차, 직업교육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제1항에서 이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조례에서 도교육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음.[86] 따라서 제3항과 같이 세부 사항을 도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별도로 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8)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제48조의19 신설)

개정안은 도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87]에 따른 사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

8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87)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19(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개선 명령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88]를 참고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학교의 학생 수 감소, 학교 간 규모 격차 및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내 적정한 학교 배치와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학교의 설치·폐지·휴지·병합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의 인가·감독 체계를 두고 있음.[89] 따라서 구조개선 명령이 학교의 폐지·휴지·

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5조(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구조개선 명령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9) **「사립학교법」**
제34조(해산 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4. 파산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병합, 학급·학과 조정 또는 학교 운영방식의 변경 등에 미칠 수 있는 범위와, 이러한 명령이 현행 「사립학교법」상 정관 변경·이사회 의결 및 인가 절차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구조개선”은 학교의 통합·폐지, 학급 또는 학과 조정, 재정·조직 운영의 개선 등 학교와 학교법인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임. 그럼에도 개정안은 구조개선의 의미, 명령의 발동 요건·내용·절차 및 불이행 시 조치 등을 법률에서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이를 도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구조개선 명령이 허용되는 범위와 학교법인의 권리·의무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90]

또한, 사립학교의 구조개선은 학교법인과 학교에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수반할 수 있음. 따라서 구조개선 명령의 근거만 두기보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85조제2항과 같이 그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직원 지원 방안을 함께 마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90) 참고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이행계획에 재무구조 개선, 학부·학과 통폐합, 사립대학의 통폐합,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립대학에 관한 제도로서 본 개정안의 적용대상과는 차이가 있으나, “구조개선”이 학교 및 학교법인의 조직·재정·운영에 중대한 변동을 수반할 수 있는 개념임을 참고로 보여줌.

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제48조의20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0(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 그리고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은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영역에 해당하며,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같은 내용의 입법례[91]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3조(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연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 정주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제48조의21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강원자치도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전략산업, 초광역 협력사업 및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1(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전략산업, 초광역 협력사업 및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는 지역혁신과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지역발전 전략 및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유사한 입법례[92]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과 대학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특례를 두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11) 지방공기업 및 지역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제48조의2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및 강원자치도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전략산업 소속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확충, 맞춤형 고용지원, 인식개선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2(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6조(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전략산업, 초광역 협력사업 및 국가정책사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촉진 특례) ① 도지사는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지방공기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지역 전략산업에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의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2. 고등학교 졸업자 맞춤형 고용 지원 및 채용 확대 3. 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후 경력개발 지원 ②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5.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강원자치도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 소속 기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 관할

현 행	개 정 안
	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 4. 그 밖에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용 노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 지원 2.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 3.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4. 강원자치도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5. 그 밖에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지원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후 계속교육 및 학위취득 지원 3. 직장 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고등학교-기업 간 채용연계 협약 체결 지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40조에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가 마련되어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대책 수립, 일정 규모 이상 공기업 등에 대한 고졸자 우선고용 노력 및 고용목표 달성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지역 정착과 원활한 노동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활용하려는 정책 방향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1항은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의 “고등학교 졸업자” 정의에는 지역적 범위 또는 ‘소외된 지역’의 판단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정책대상을 특정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려는 취지라면 그 지역의 범위와 선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한정의 취지가 아니라면 “소외된 지역의”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조문 간 적용대상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2항제1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93]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별도로 열거하는 것은 제1호와 대상이 중복될 소지가 있음.[94]

---

93)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9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큰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 정의규정보다는 지원사업의 우선대상 또는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4항제3호의 지방세 감면 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을 통해서만 규정할 수 있으므로, 개별법에 이를 선언적으로 규정할 경우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조문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지역 전략산업 연계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제48조의23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강원자치도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국제행사 개최, 해외 사절단 운영, 예산 및 지원인력 확보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강원자치도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취업연계 보조금, 거주·생활시설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3(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공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 ② 강원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95]를 따른 것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양성·취업 및 정주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임.

---

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2조(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공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
② 통합특별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만, 조문 제목은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으로 되어 있으나, 조문 본문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지역 정착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과”와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다소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제목과 본문 간의 정합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제48조의24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미래신산업 분야 인재의 유입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인턴십·직업훈련·일자리 매칭 및 채용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의 입찰에서 지역 내 미래신산업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4(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① 도지사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대학·연구소와 기업 간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2. 미래신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 훈련, 경력 설계 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현 행	개 정 안
	3.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임금 보조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 4. 그 밖에 인재의 고용 촉진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공사·물품 구매입찰 하는 경우 지역 내 미래신산업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지역 내 대학·연구소와 기업 간 인턴십 및 현장실습의 연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지역인재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43조에 동일한 입법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고용지원 특례를 두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 가능성이 있어 보임.

(14) 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제48조의25 신설)

개정안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강원자치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 무상 임대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5(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① 도지사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96]를 따른 것으로서, 인재 유치

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4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와 지역 정착을 위하여 주거 지원을 연계하는 정책은 지역 산업 육성과 인재 확보 차원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특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제1항에서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 제2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개념의 정의·범위와 개념 간 상호 관계가 법률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책 대상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이와 관련한 조문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5)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제48조의26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미래신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춘 학교를 유치하거나,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6(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미래신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97]를 따른 것으로서, 미래신산업

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인근의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관련 분야 인재와 그 가족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러한 정책 방향은 산업·연구 거점과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345조(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미래신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6.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제4편제1장)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제51조의2 신설)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제2호[98]에 따른 농업인등이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1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9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 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

현행 농촌융복합산업법은 농업인등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업·서비스업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의미함.[99]

개정안은 현행 농촌융복합산업법에 따른 인증제도의 기본구조는 유지하되, 농촌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거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이해됨. 이에 따라 농촌지역 외에 거주하는 농업인등도 강원자치도 내 농촌자원을 활용하거나 농촌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음.

다만 도지사 추천의 기준·절차, 추천의 법적 성격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심사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비거주 농업인등에 대한 특례가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 추천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9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한편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100] 및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1]에도 유사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지역 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제51조의3 신설)

개정안은「동물보호법」제64조제1항[10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103]에 대하여 축사시설 개선비 지원,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4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101)「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에 유사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

102)「동물보호법」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3)「동물보호법」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1조의3(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현행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하여 축사시설 개선비, 경영 관련 지도·상담·교육,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지원사항을 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자치도 여건에 맞추어 인증농장의 시설개선, 경영 및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유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은 동물복지축산의 확산과 축산농가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104] 및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5]에

도 유사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지역 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제56조의2 신설)

개정안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의3[106]에 따른

---

10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7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이 조에서 "인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5)「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에 유사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

106)**「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그 밖에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2.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3.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지원
4. 그 밖에 산촌주민에 대한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경우
4. 제29조의5를 위반하여 산림청장에게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권한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도지사가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6조의2(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는 강원자치도의 산촌 여건과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107]에 유사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고, 소관 부처인 산림청도 지정권한 이양에 대하여 수용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가지더라도 국비 지원 및

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7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이 조에서 “인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적 지원을 차별없이 시행되도록 국가전문기관(임업진흥원 등)과 지역센터 간 유기적인 행정·지원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제57조의2 신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108]을 수립·시행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109]을 운용하는 경우, 강원자치도 수산업의 지속적 영위와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 비축·수매자금, 산지·소비지 유통자금 및 어업인 소득보전·경영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0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이하 생략)

10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2(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유통 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기금운용 시, 강원자치도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 적체물량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 정부 비축·수매자금 지원 2. 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 3. 그 밖에 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산발전기금은 수산업 경영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어업경영자금 지원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융자 또는 보조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는 수산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유통체계 효율화 및 관련 정책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기구임.

개정안은 수산발전기금의 운용 및 수산물 유통정책 추진 과정에서 강원자치도의 수산업 여건과 수산물 가격안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임.

산지 적체물량 해소, 수산물 소비촉진 및 어업인 경영안정은 현행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운용 범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음.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110] 및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1]에도 유사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57조의3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도지구에 대하여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개선, 스마트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3조(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통합특별시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 적체물량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 정부 비축·수매 자금 지원
2. 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
3. 그 밖에 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1)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에 유사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3(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 지정 및 선도지구 조성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스마트수산업은 정보통신기술, 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수산물의 생산·양식·유통 과정에 활용하여 생산성, 경영 효율성 및 유통체계의 고도화를 도모하려는 정책 분야로 볼 수 있음.

해양수산부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112]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강원자치도 내 스마트수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113] 및 전북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

11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기후위기, 인공지능(AI) 혁신으로 극복한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 2025.11.05.

1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4조(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 지정 및 선도지구 조성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한다.

률안[114]에도 유사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1항은 선도지구의 지정, 조성계획 수립·고시, 시장·군수와의 협의 및 조례 위임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조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바, 선도지구의 지정 및 협의절차와 조성계획의 수립·고시 및 조례 위임사항을 각각 항으로 구분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개정안은 선도지구의 지정 및 조성계획을 “시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자치도의 공보는 “강원특별자치도보”이므로 이를 “도보”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6)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제57조의4 신설)

개정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그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4)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324호)에 유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4(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0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역 내의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4호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되, 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구분하고 있음.[115] 또한 같은 법 제40조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16]

1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1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 **제1항**의 "**시·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역 내의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는 규정은 국토계획법상 시·도지사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강원자치도지사가 행사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즉,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에 관한 지정·변경 권한은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이미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제1항만으로는 기존 권한체계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권한 이양 또는 특례가 발생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함.

반면 개정안이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 전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려는 취지라면, 현행 국토계획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1제곱킬로미터 이상 공유수면에 관한 권한까지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특례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95조제1항[117]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기존 시·도지사에게 귀속되어 있던 수산자원보호구

1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5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0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권한은 관할구역 내의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역 지정·변경 관련 권한을 새로 설치되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정리하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반면 강원자치도는 기존 도지사가 계속 존속하는바, 개정안 제1항이 현행 국토계획법상 시·도지사 권한을 단순히 확인하는 규정인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귀속된 권한의 일부까지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인지 그 규정의 실질적 의미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2항**은 도지사가 지정·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의 권한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심의 대상 및 절차의 적용범위도 분명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제1항에서 도지사가 행사하는 권한의 대상 범위를 우선 명확히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등 관련 절차의 적용관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7) 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제57조의5 신설)

개정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강원자치도 관할 해역에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5(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 용도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강원자치도 관할 해역에 한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현행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관리계획수립지침 및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항만·항행구역 및 군사활동구역 등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18]

개정안은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병렬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 권한 중, 강원자치도 관할 해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강원 관할 해역에서의 해양용도

11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6.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7. 항만·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8. 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9.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구역 지정·변경 권한 행사를 도지사에게 일원화하려는 특례로 이해됨.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유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은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음.[119] 다만 해당 특례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승인,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현행 해양공간관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강원자치도 관할 해역”의 범위는 소관 부처의 의견 등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제57조의6 신설)

개정안은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및 관리, 연안관리지역 및 연안용도해역의 지정·관리, 연안에 대한 점검, 행위제한·원상회복 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열거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는 것임.

또한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열거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양되는 권한과 관련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배제하려는 것임.

---

1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6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6(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②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4호, 같은 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단서,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행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기본조사, 연안정비사업, 연안관리지역 및 연안용도해역의 지정·관리, 연안 점검 등 연안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열거된 연안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일부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자치도 연안의 여건을 반영한 연안정비 및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한편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120] 및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1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도 유사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은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다만 해양수산부는「연안관리법」제21조[121]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이 국가 전체 연안의 보전 및 정비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배제하는 개정안 제1항 후단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제1항 후단의 심의 배제가 이양 대상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특례인지, 국가 연안정책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체계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2항에서「연안관리법」제5조제6항[122]에 따라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제3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②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21)**「연안관리법」**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22)**「연안관리법」**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연안기본조사·보완조사 및 정밀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사항이므로 조사 내용·방법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권한 이양의 범위 및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배제 및 연안조사 관련 사항의 조례 위임은 국가 연안정책의 통일성, 연안정비기본계획 및 연안조사 체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문에서 제외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국가어항 지정 및 시행에 관한 특례(제57조의7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어촌·어항법」 제17조[123]에 따라 국가어항의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계획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3) **「어촌·어항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신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어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7(국가어항 지정 및 시행에 관한 특례) 도지사가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의 신규 지정을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개발할 수 있다.

현행 「어촌·어항법」은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어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어항의 지정·개발 권한 자체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아니나, 도지사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바탕으로 국가어항의 신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124]조에도 동일한 내용의 특례가 마련되어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지역·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8조(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의 신규 지정을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개발할 수 있다.

있고,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유사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제57조의8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방어항이 국가 등이 추진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지방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8(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 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어항은 지방의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어촌의 생활·생산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어항으로서, 국가어항과 구분됨. 현행 「어촌·어항법」은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어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25]

125) **「어촌·어항법」**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1.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

개정안은 지방어항의 지정·관리 권한은 도지사에게 유지하되, 국가 해양수산정책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한 지방어항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어항의 기능 개선 및 개발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126]에 동일한 내용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고,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7]에도 유사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1) 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제57조의9 신설)

개정안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관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지방어항: 시·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시장·군수·구청장

1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9조(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지방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 연계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7)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에 유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9(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관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섬 발전 촉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섬을 도서로 규정하고,[128] 개발대상도서에 관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업계획 중심의 지원체계와 별도로,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129] 및 제주특별법·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0]에 유사한 지원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점은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

128)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1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0조(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30)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324호)에 유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공표한 2025년 말 기준 섬 현황에 따르면, 강원자치도에는 29개의 섬이 있으나 모두 무인도서로 분류되어 있음.[131] 따라서 현시점에서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과 입법 실익이 분명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제57조의10 신설)

개정안은 갯벌·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 이른바 “바다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및 주민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10(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갯벌·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연

131) 행정안전부 · 한국섬진흥원 2026년 유인섬 현황조사_2025. 12. 31 기준

현 행	개 정 안
	계하여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바다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주민 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및 주민참여 비율 등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잘피·염생식물 및 해조류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 기능을 활용하는 블루카본을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해양 탄소흡수력 강화, 민간·지역의 참여 확대 및 신규 블루카본 인증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음.[132)]

개정안은 해양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기후·에너지 전환에 따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및 참여를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한 내용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은 지역

132) 해양수산부는 2023년 5월 31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라 블루카본 흡수량을 2030년까지 106만6천톤,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블루카본 흡수량을 2050년 136만2천톤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 블루카본: 해양생물 등 해양 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바다에 사는 종자식물의 일종) 등을 포함함

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한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제명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개정안의 심사·정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13)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제57조의11 신설)

개정안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133]를 지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11(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

13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
2.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
3.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
4. 항만·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6. 군사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현 행	개 정 안
	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 수용성, 환경·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협의 과정에서 지역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 손실보상, 주민 수용성, 환경·경관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과정에 도의 입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동일한 내용의 특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134] 해상풍력 입지 수요와 해양·어업 갈등 가능성이 존재하는 강원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형평성과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1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0조(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의 수용성, 환경적·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4) 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제57조의12 신설)

개정안은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운영 및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허용하고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식업 및 어선어업의 허용 기준, 대상 해역, 어업의 종류, 안전관리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12(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업과의 상생공존을 위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면허에 한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및 어선어업의 허용 기준, 대상 해역, 어업의 종류, 안전관리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법상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아야 하며, 어선어업은 어업의 종류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특히 「수산업법」 제40조는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연안어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구분하고 있음.[135]

개정안은 해상풍력 발전시설과 양식업 또는 어선어업이 공존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수산업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해양수산부는 어업허가 및 어선어업 관련 특례는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구별 없이 규정되어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특히 전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어업의 허용기준·대상해역·어업종류·안전관리·조업제한 등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또한 해수부는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다한 어업허가를 관리하기 위해 근해어업은 1992년부터, 연안어업은 2001년부터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전국적으로 통일된 어업허가 관리 정책과 달리 지자체별로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관련 조항의 삭제 또는 문구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135)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136]에 유사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은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어선어업에 관한 특례는 현행 어업허가 및 수산자원 관리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의 수정의견을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정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제57조의13 신설)

개정안은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기본계획의 신속한 변경 및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13(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① 도지사는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을 요청할

1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1조(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업과의 상생공존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면허에 한정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및 어업의 허용 기준, 대상 해역, 어업의 종류, 안전관리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 수급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안 제1항은 도지사에게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항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항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고, 제3항은 국가가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에 대하여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특화단지 조성을 직접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판단과 절차를 전제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지원하

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유사한 항만지정·개발 특례 및 해상풍력 산업 특화단지 조성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137] 해상풍력 예비지구·발전지구를 관할하는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특례를 둘 필요성은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6) 수상태양광 산업 육성(제57조의14 신설)

개정안은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도지사가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2조(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통합특별시 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14(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① 국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는 수상태양광 산업 육성과 주민참여·이익공유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138] 및 전북특별법·제주특별법[139]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보호·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은 수상태양광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 정책방향을 재확

1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3조(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139)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324호)에 유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인하고 이를 강조하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임.[140]

또한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 대상이나 지원 범위를 강원자치도 내 사업으로 한정하거나, 강원자치도에 대한 별도의 권한 이양·규제특례 또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아님. 따라서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 사항을 지역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입법기술 및 법체계상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3항은 도지사가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의 범위와 “추진”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또한 권장·지원의 대상과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 및 주민복리 증진 사무의 범위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환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제3항은 새로운 인허가 권한이나 구체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부여하는 특례라기보다는 정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제3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조례 또는 관련 계획을 통하여 대상 사업, 권장·지원의 대상 및 지원 방식 등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17) 수상형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특례(제57조의15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댐 구역·저수지·담수호 등의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 및 설치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15(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특례) ① 도지사는 댐 구역, 저수지 및 담수호 등의 수면에 부유(浮遊)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지 및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경관 보호에 관한 사항 2.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설비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 및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준에 적합하게 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신고·해제(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이는 수상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별도의 입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 제도에서도 수상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와 함께 사업의 입지 및 수면의 법적 성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음.

다만「전기사업법」제7조의3은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두고 있음.[141]

---

141) **「전기사업법」**

제7조의3(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시·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따라서 개정안 제2항의 인·허가 의제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제도와 상당 부분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바,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별도의 특례를 신설할 실익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이 기존 제도보다 의제 대상이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수상형 태양광의 입지·설치기준을 도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댐 구역·저수지·담수호 등 다양한 수면을 대상으로 하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일률적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대상 수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인·허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등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142] 따라서 개정

---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안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만을 의제하는 것이 대상 수면 전체의 법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입지·설치기준은 제2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전제요건으로 기능하므로 단순한 행정안내 기준을 넘어 사업자의 설치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그 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기준을 대체하거나 완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범위에서 수상형 태양광의 입지·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3호의 “그 밖에 환경 및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기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기준의 범위와 한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2항은 제1항의 공고기준에 적합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인·허가 의제의 전제가 되는 주된 인·허가와 그 처분권자, 신청 및 협의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142)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본법」은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전제로 관련 인·허가를 의제하는 구조를 규정하면서,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143]

따라서 개정안의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및 그 처분권자와 신청·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행 「전기사업법」상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의제제도와의 중복 여부 및 별도 특례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개정안은 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인·허가 의제제도와의 중복 여부 및 별도 특례의 실익을 검토하고, 대상 수면의 법적 성격에 따른 적용 인·허가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및 인·허가 의제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43)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18)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제57조의16 신설)

개정안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변경허가 등에 관한 일부 사항 및 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근해어업을 제외한 시험어업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대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16(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행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허가 유효기간, 종류별 수산종자 및 시설기준, 변경·폐업신고 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제1항은 이러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1항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하위법

령에 위임한 사항 전반을 포괄적으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위임 대상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과 같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 조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144]

한편 현행 「수산업법」은 시·도지사가 시험어업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145] 개정안 제2항은 근해어업을 제외한 시험어업에 대해서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과의 사전협의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서, 지역 수산자원의 특성과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의 개발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수산종자산업 및 시험어업에 관하여 유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146] 이와 같은 특례는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1조(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⑧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45) **「수산업법」**
제46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① 제7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7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1조(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⑨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9) 낚시어선의 이용에 관한 특례(제57조의17 신설)

개정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신고사항, 신고 절차, 영업의 폐쇄 등에 관한 기준 및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17(낚시어선의 이용에 관한 특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가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및 전문교육 이수 등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147]

14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자치도의 해양·내수면 여건, 낚시어선업의 운영 실태 및 지역 안전관리 수요 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특히 영업의 폐쇄 및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비할 수 있어, 낚시어선업의 안전한 운영과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음.[148]

이에 비추어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낚시어선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각 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1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1조(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 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특례(제57조의18 신설)

개정안은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방법과 유어장의 지정·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18(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현행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등이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149]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역의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레저 여건을 고려하여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어장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하고,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 및 수량,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형 어촌관광 및 해양레저활동을 활성화하고,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업의 부가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유어장 지정에 관한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바,[150]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유어장 운영 및 해양레저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49) **「수산업법」**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1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1조(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⑭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하여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⑮ 제14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⑯ 통합특별시장은 제14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1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1) 선박등록특구의 지정(제58조의2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고, 해당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세제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2(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 국가는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른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및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 관계법령과 지방세 감면 등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④ 선박등록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선박원부 등록 및 선박국적증서 발급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151]

또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경감하고,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50퍼센트 경감하는 등 일정한 세제지원을 두고 있음.[152]

개정안은 이러한 일반적인 국제선박 등록 지원보다 강화된 세제 혜택을 통하여 강원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의 등록을 유도하고, 항만·해운산업 및 관련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선박등록특구를 지정하고, 제주 내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153]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해운산업 육성 및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

---

151)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5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5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른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선박등록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조세의 부과·감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므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구체적인 감면 요건·범위·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등 관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154]

개정안 제2항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관계 법률에 강원 선박등록특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면 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2항만으로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제3항은 국가와 강원자치도가 국세·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 및 지방세 관계 법률의 제정·개정은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방세 감면 조례의 제정·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따라서 특정 지역특별법에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을 의무화하는 방식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54)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한편, 개정안의 내용은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384호)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으로, 해당 조문은 2026년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바 있음.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을 통해 정하여야 하고, 현행 국제선박 세제지원 제도와의 중복 및 지방세 특례 운영상 혼선의 우려도 있으므로, 선박등록특구에 관한 개별 특별법에 세제지원 근거를 두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2) 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제58조의3 신설)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강원자치도가 해운·항공·도로를 연계한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고, 도지사가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3(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① 정부는 강원자치도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항공·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국내·외 물류체계 및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활동의 촉진, 제조·유통산업 등과의 연계강화 등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은 강원자치도가 복합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려는 규정으로 보임.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155]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해운·항공·도로 간 연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두는 것은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및 지역 물류산업 육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 발전계획을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56]

1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8조(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항공·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6)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후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작성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제2항과 같이 도지사가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법률상 기본계획 수립 주체 및 계획체계와의 관계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와 같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거나, 개정안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중앙정부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획의 명칭·성격 및 중앙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제58조의4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재정지원, 시설사용료 감면, 관세·환적 제도개선, 전담기구 운영 및 지역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4(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일정지역을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강원자치도의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공항·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에서의 관세절차 및 신속한 환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공항·항만 및 배후지를 연계한 국제물류 기반을 조성하고, 물류 인프라 확충·기업 유치·환적 활성화 등을 통하여 복합물류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측면이 있음.

다만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부합 여부, 국제물류시설 간 연계 가능성, 물류산업의 집적·융복합 효과,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및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57] 또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158]

이에 비추어 **제1항**과 같이 강원자치도가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정 요건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여부 및 대상 지역 간 우선순위를 판단하도록 한 현행 특별법의 체계와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제2항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공항·항만 및 배후지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59] 따라서

157)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국제물류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무역항·공항·철도 중 둘 이상의 국제물류시설이 효과적으로 연계 가능한 지역으로서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물류 거점 지역일 것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지역일 것
4. 물류산업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효과가 가능한 지역일 것
5. 국제물류진흥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58)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확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9)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강원자치도에 한정하여 별도의 재정지원 특례를 둘 필요성 및 현행 지원 규정과 비교한 추가적 실익이 명확하지 아니함.

제4항의 관세절차 및 환적 제도개선과 **제5항**의 국제물류진흥지역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은 강원자치도에 한정된 특례라기보다 국가 차원의 물류·통관 제도 및 국제물류진흥지역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됨.

관세절차 및 환적은 「관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지정 여부 역시 해당 제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임. 따라서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 설치 요건, 업무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재정경제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것으로, 강원자치도 내 국제물류진흥지역에만 관세절차의 특례를 두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 제4조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종합하면, 개정안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현행 특별법의 절차·지원체계와 중복되거나, 법정 지정요건 및 국가 차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도운영 체계를 변경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강원자치도에 대한 별도 특례를 두려는 경우에는 현행 특별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지역적 제약 또는 제도적 수요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한정하여 특례의 필요성과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4) 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제58조의5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도서·벽지 주민의 교통·물류 편의 증진, 해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 대형 재난의 복구 및 회복 또는 항만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항만 관리·시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5(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균형발전, 도서·벽지 주민의 교통·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2. 해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형 재난 발생에 대한 복구 및 회복이 필요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4. 그 밖에 항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항만법」제79조제1항은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160]

개정안은 강원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관하여 지역균형발전, 도서·벽지 주민의 교통·물류 편의, 국가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 또는 재난 복구 등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는 지방관리항만이 지역주민의 교통·물류 기반시설로 기능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상풍력 등 국가적 사업의 추진 기반으로 활용되거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지방관리항만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또는 재난 복구에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160) **「항만법」**
제79조(비용부담 원칙)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항만의 공공성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방관리항만 지원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바,[161]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국가 지원 근거를 두는 것은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5) 자유무역지역 연계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8조의6 신설)

개정안은 도내 자유무역지역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타당성, 발전가능성, 지역 특수성 및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항만배후단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6조(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균형발전, 도서·벽지 주민의 교통·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2. 해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4·16세월호참사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에 대한 복구 및 회복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항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6(자유무역지역 연계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제58조[162]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는 해수부장관에게 「항만법」 제45의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타당성과 발전가능성,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항만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163]

---

16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항만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163) **「항만법」**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
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2.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과 항만배후단지를 연계하여 물류·보관·가공·유통 기능을 집적하고, 항만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 물류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입·제조·물류 활동의 촉진을 위한 제도이고,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양 제도는 항만 및 배후지의 물류기능 강화 측면에서 연계 가능성이 있음.

다만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인 강원특별법 제58조의2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지역 여건과 특성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64] 따라서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 지정 및 지역 여건 반영에 관한 동 특례와 적용 대상 및 효과가 중복될 소지가 있음.

또한 항만배후단지 지정기준은 「항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서 정하여 운용되고 있음.[165]

---

16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의2(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항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해당 지역 여건과 특성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10. 22.] 제58조의2

165) **「항만법」**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자유무역지역과 항만배후단지가 물류기능 강화라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항만배후단지 지정기준을 완화할 정도로 양 제도의 관련성이 높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은 완화하려는 기준의 대상·내용 및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지정기준은 항만 간 과다 경쟁 방지, 물동량 전망 및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의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서 통일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지역 특성을 이유로 특별법에서 이를 완화하는 것은 항만정책의 일관성 및 항만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이에 지정기준 완화 규정은 삭제하고, 도지사가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지역 여건 및 특성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종합하면, 자유무역지역과 항만배후단지 간 연계를 촉진할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어 보이나, 시행 예정인 강원특별법 제58조의2와의 기능 중복 여부, 지정기준 완화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 전국 단위 항만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유수면 매립지, 항만 유휴부지(遊休敷地)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6)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제58조의7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농어업·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정착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의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의무, 기숙사·공동숙소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사증·체류·지역특화형 비자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특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다문화 이해 증진 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7(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계획에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의료 지원 및 자녀 보육·교육 지원 방안 ②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강원자치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의 완화 2.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절차

현 행	개 정 안
	의 간소화 3. 강원자치도 내 특정 구역 또는 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 확대 ④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의 입법례[166]를 참고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강원자치도의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인력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7조(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의료 지원 및 자녀 보육·교육 지원 방안
②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의 완화
2.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절차의 간소화
3. 통합특별시 내 특정 구역 또는 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 확대
④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2항은 농어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공동숙소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숙소 문제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은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지원 체계나 보조비율 기준·상한 등까지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제2항의 취지가 도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를 부여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다른 법령을 배제하는 표현을 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제3항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사증·체류자격 요건 완화,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절차 간소화,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 확대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자치도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사증·체류, 계절근로자, 지역특화형 비자 등 출입국관리의 핵심 제도를 포괄적으로 열거하면서도 특례의 대상·범위·상한 등에 관한 기준을 두지 않아 규율 범위가 넓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1호는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강원특별법 제44조의2[167]와 같이

16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정 가능한 항목과 상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3호의 “특정 구역 또는 산업 분야”은 법정 지구 또는 산업군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7)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제58조의8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가 정책펀드의 기획·운용, 공공자산의 관리·처분·개발 및 전략사업 투자를 수행하는 기관을 출자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8(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① 강원자치도는 정책펀드의 기획·운용,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개

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지구·단지·지역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2.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3. 강원자치도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4. 강원자치도에 있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② 제1항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마다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시행일: 2026. 10. 22.] 제44조의2

현 행	개 정 안
	발,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출자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는 지방소멸대응,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다.

이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및 정책펀드 조성을 담당할 전담 투자기구를 마련하여 지역혁신성장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168]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169]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운용에는 그 유형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절차와 규율이 적용됨.

따라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제1항의 기관 및 제2항의 집합투자

1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6조(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정책펀드의 기획·운용,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개발,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출자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소멸대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다.

16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구는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제도 및 자본시장법상 제도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보임.

다만 조문 제목은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로 되어 있으나, 제1항은 설립 대상을 포괄적으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식회사 형태의 전담 투자기구 설립을 의도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함. 개정안이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을 통하여 정책펀드 조성 및 전략사업 투자를 추진하려는 취지라면, 설립 대상의 명칭·법적 형태 및 업무 범위를 조문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2항은 강원자치도가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자치도가 직접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출자에 참여하려는 것인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투자금융주식회사가 정책펀드의 조성 또는 출자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함.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요건 아래 집합투자기구에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은 그 유형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절차와 요건[170]이 적용됨.

따라서 강원자치도가 직접 집합투자기구를 설립·운용하는 구조를 예정하는 것이라면 그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170)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투자회사 등 그 유형에 따른 방식으로 설정·설립되어야 하고, 설정·설립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같은 법 제12조).

“기관”을 “투자금융주식회사”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2항의 집합투자기구 설립·출자 주체와 투자금융주식회사의 역할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8)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제58조의9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17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의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6.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조[172]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173]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9(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7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다.

17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연구개발특구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지방투자기업 등 현행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강원자치도의 전략산업 유치 및 기업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관련 법령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원 한도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은 기업의 유형, 투자 내용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지고 있음.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금융·재정지원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보조금 지원 특례를 두고 있으며,[174] 전북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전남광주와 같이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175]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북·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개정안의 투자지원 특례와 비교할 때 적용대상을 연구개발특구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

1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9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175)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324호)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강원자치도에는 투자진흥지구와 동일한 법정 특례지구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북·제주자치도 관련 개정안의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지원 특례와의 형평성, 일반 시·도와의 투자보조금 지원 수준의 격차 및 국가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9) 기회발전특구 지정(제58조의10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와 강원자치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17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10(기회발전특구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1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5조(기회발전특구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도지사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177]

따라서 제1항의 우선 지정 특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 절차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 안에서 강원자치도의 전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178]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2

177)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7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항은 강원자치도의 지원 참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는 있으나, 현행 규정과 내용상 중복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제2항의 입법적 실익과 현행법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제1항과 관련하여, 현 제도상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관할구역 중 후보지역을 정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와의 경쟁을 통해 특구를 지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우선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며, 제2항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0) 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제58조의11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성장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재정지원 및 각종 시책사업에서의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11(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강원자치도 내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임.[179]

이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위기산업의 회복을 위한 금융·고용안정·연구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대체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편 지방분권균형성장법 제51조는 통합 지방자치단체[180]에 대하여

17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80)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시, 군 및 자치구)에서 정한 지방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보조금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시책사업에서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181] 이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은 도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재정상 특별지원 및 시책사업상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의 입법례[182]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분권균형성장법 제51조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인 반면, 개정안은 이를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우대지원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유사한 산업위기지역 특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위기지역의 신속한 회복 및 지역

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1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6조(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과 함께, 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시·도의 산업위기지역과의 지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1)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58조의12 신설)

개정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된 선도사업[183]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의 지정·취소 권한을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되, 도지사가 거점지구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도지사가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12(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1항·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183) 선도사업: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2조)

현 행	개 정 안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지능정보화 기본법」제33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선도사업[184]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전 거점지구 조성의 목표·전략, 추진체계, 선도사업의 내용, 재원 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185]

개정안은 거점지구 지정·취소 및 조성계획 수립의 주체를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이나, 거점지구 지정 전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정·

184) 선도사업 :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사업

185)**「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점지구 조성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거점지구에서 추진할 선도사업의 내용 및 지능정보기술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점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점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취소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기본적인 절차와 국가 정책과의 연계 체계는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산업·기술 여건 및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지능정보화 선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지역 주도의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2)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제58조의1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고, 공동연구개발,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공유·활용, 생산시설·장비의 공동투자·이용, 원자재·부품의 상호 수급,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판로 개척 등의 협력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항).

또한 산업연대협력체의 협력사업 중 도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제2항), 협의 시 공정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제3항).

아울러 산업연대협력체의 신청·지정·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 관련 사무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정부의 우선 검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4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13(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연구개발(R&D),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활용 2. 생산시설·장비의 공동 투자·이용 및 부품·원자재의 상호 수급 체계 구축 3. 공동 브랜드 개발, 온라인·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공동 마케팅·인증 획득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산업연대협력체의 신청, 지정,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며, 정부는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사업자 간의 가격·거래조건·생산량·거래지역 등을 공동으로 정하는 등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또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상 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186]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4조는 선정된 연대협력모델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187] 개정안 제2항 및 제3항은 이와 유사하게

18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18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제42조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 가운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 생산기반 공동 활용 및 공동 판로 개척 등을 촉진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투자비용과 사업 위험을 분산하고, 지역 내 산업생태계의 집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이미 도입[188]된 점을 고려하여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4항의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 및 “최우선적으로 검토”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요건 및 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을 배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대상과 처리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으로 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0조(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연구개발(R&D),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활용
2. 생산시설·장비의 공동 투자·이용 및 부품·원자재의 상호 수급 체계 구축
3. 공동 브랜드 개발, 온라인·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공동 마케팅·인증획득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연대협력체의 신청, 지정,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며, 정부는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제58조의14 신설)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등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는 것임.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19조[189]의 입법례와 동일한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14(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현행 판로지원법 제13조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90]

1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9조(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9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이에 따른 우선구매제도는 신기술제품, 신제품, 성능인증제품 및 우수조달제품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수요를 확대하고, 도지사가 도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를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판로지원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강원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도내 공공구매 촉진에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특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강원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강원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전 수요 검토, 중소기업 참여방안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34) 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제58조의15 신설)

개정안은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 인재의 유치·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및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 재정지원,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복지카드의 발행·운영 및 중소기업 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15(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도지사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 인재 유치·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행·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대기업 종사자에 비하여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바, 여

러 기업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도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191]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공동복지 제도를 지역 차원에서 확대·연계하여 지역기업·소상공인·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및 전담 복지센터를 통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유사한 공동복지사업 특례가 도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192] 강원자치도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복지사업

---

191)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1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0조(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인재의 유치·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행·운영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특별법 간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5)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제58조의16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설치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 상권 구조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정책 지원,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관련 지원 확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16(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현 행	개 정 안
	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및 같은 조 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3.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제 취약지역 ④ 국가는 강원자치도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경영 여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강원자치도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유통·할인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따라 추진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보호·육성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원 효과를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193] 강원자치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할

193)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 제1항은 “강원자치도 설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 상권 구조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경제 구조 변화를 전제로 마련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유사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194]

그러나 강원자치도는 기존 강원도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된 것이므로, 자치도 설치 자체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 또는 상권 재편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는 구체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문언과 같이 지원의 필요성을 “강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1조(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3.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제 취약지역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경영 여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유통·할인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따라 추진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원자치도 설치로 인한 영향”에 연계하는 것은 입법적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보임.

따라서 조문의 취지와 적용 대상을 보다 일반화하거나, 강원자치도의 실제 정책환경에 맞게 문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36) 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제58조의17 신설)

개정안은 역사(驛舍)와 역사 주변지역을 연계한 산업생태계 조성, 철도경제권 개발·지원, 기반시설 설치 지원,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반영 특례 등을 통하여 지역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17(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역사와 역사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역사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를 말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철도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강원자치도 및 철도사업자는 철도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할구

현 행	개 정 안
	역 내 복합환승센터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195]를 참고한 것으로, 철도와 역세권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새로운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실질적 특례라기보다는 향후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보강하는 규정으로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특례로 보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기본계획의 성격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도지사 요청 시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1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2조(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역사와 역사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역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철도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통합특별시 및 철도사업자는 철도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7.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제4편제2장)

(1)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61조의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기후위기적응센터를 지정하고, 그 수행실적을 평가하며, 국가와 도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1조의2(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기후위기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도지사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196]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기후위기적

19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응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197]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차원에서 별도의 기후위기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함으로써, 강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적응정책의 조사·연구·평가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동일한 내용의 특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198] 강원특별법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탄소중립기본법 제46조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제2항), 지정·사업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단계별 위임 구조를 두고 있는바, 개정안도 이를 준용하여 적응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센터의 지정·사업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9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기후위기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형·종류와 적응센터의 지정·사업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함께 두는 것이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임.

(2) 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제61조의3 신설)

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강원자치도 관할 탄소중립 지원센터[199]에 대하여, 국가가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1조의3(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종전의 강원자치도 관할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지정한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00]

19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201] 강원특별법에 유사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지역 특별법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만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의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제61조의4 신설)

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고용환경 변화, 지역경제 침체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강원자치도가 정부에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지구 지정의 변경·해제 요청 및 특별지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1조의4(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① 강원자치도는 정

2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0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특별지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은 고탄소 산업 및 관련 지역의 고용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완화하고 대체산업 육성 및 일자리 전

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석탄산업 축소 및 폐광에 따른 산업·고용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강원자치도의 경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제도를 활용하여 폐광지역의 산업 전환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유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2] 지역특별법 간 체계 정합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는 이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건, 지정·변경·해제 및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203] 아울러

---

2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1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는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특별지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특별지구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산업·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계획,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강원도지사는 현행법상으로도 특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1항 및 제2항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거나 절차상 특례를 마련하는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은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내용과 방법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개정안 제3항은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지원체계와 비교하여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특별지구 지정 요청 및 지원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나,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별도로 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제61조의5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의무와 연계하여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1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공영주차장 등의 소유자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204] 구체적인 설치 위치·수량·기

2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

준은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에서 시설 규모·용도, 안전 및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지하공간 특성상 화재 시 대피 곤란·연소 확대·유독가스 정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비용을 보조하거나,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음.[20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강원자치도 내에서도 지하 충전시설의 안전성 우려와 주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지상 이전 수요가 존재할 수 있고, 주민 등에게는 이전 비용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지원에 관한 유사한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206] 강원특별법에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관련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05) YTN,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이전비 지원 조례 첫 제정”, 2024.09.07. https://www.ytn.co.kr/_ln/0115_202409071017067412

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댐수입금 공개 및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특례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에게 발전판매 수입금 및 용수사용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68조의2), 총저수량 10억톤 이상인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에게 기존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과 별도로 발전판매 및 생활·공업용수 판매 수입금의 20%를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제68조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8조의2(댐수입금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에게 해당 다목적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입금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댐사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사용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징수한 사용료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용료 3.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 등의 자료 제출의 방법, 시기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8조의3(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총저수량 10억톤이상의

현 행	개 정 안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댐사용권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재원과 별도로 해당 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에 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조례로 설치·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해당 다목적댐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댐 건설 및 운영은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지역발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댐 운영에 따른 편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지

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댐관리청 또는 댐사용권자 등의 출연금으로 그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수판매 수입금의 22%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6%를 출연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207]

그런데 개정안은 현행 지원사업 재원과 별도로 발전판매 및 용수판매 수입금의 20%를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발전판매 수입금의 경우 현행 출연금과 합산하여 최대 26%, 용수판매 수입금의 경우 최대 42%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재정 부담》

구 분	현 행	개정안
출연금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22 이내	좌 동
기 금 (신설)	-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과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20

이는 댐사용권자에게 상당한 추가 재정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현행 지원사업의 재원 규모와 집행 실태, 추가 재원 수요 및 기존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댐용수가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판매되어 시설 교체·보수 등 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회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간 물값이 동결된 상태에서 수입금의 과도한 추가 출연은 시설 안전관리 여력을 약화시키거나 물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제68조의2에 따른 수입금 자료제출은 제68조의3에 따른 출연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나, 발전·용수판매 수입금은 댐사용권자의 경영성과 및 영업상 정보에 포함할 여지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강원자치도에 자료제출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한편, 현행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 건설·운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일정 지역의 주민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개정안의 기금은 해당 다목적댐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원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음.

따라서 추가 출연금의 부담 주체와 수혜 대상 간 관련성이 충분한지, 기금이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의 내용은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384호)에 포함되었던 조문과 유사한 것으로, 해당 조문이 2026년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6) 오염총량관리제 지역 개발부하량 관리에 관한 특례(제68조의4 신설)

개정안은 한강·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별로 할당되는 지역개발부하량에 관하여, 사업의 승인·허가 등의 기관이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그 협의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하려는 것임.[20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8조의4(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08) 관련 개념 정리
-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 수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를 배분·관리하는 제도
- ○ 오염부하량: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일정 기간 단위로 산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등을 기준으로 관리함
- ○ 지역개발부하량: 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 가능 총량 중 택지·산업단지·관광단지 등 장래 지역개발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확보한 오염부하량의 범위를 말함. 개발사업은 해당 범위 내에서만 추진될 수 있음.
- ○ 지방환경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을 말하며, 수계별 수질관리,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오염총량관리 관련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함.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8조의2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승인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개발계획부하량의 지역개발사업별 할당 시 지역개발사업의 승인·허가 등의 기관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협의하는 대상사업은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등의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에 관한 협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하도록 한 것을, 강원자치도에서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제도와 개정안 비교》

구 분	현행 제도	개정안	주요 변화
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개발사업	현행과 같음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는 유지
협의 사항	개발사업별 지역개발부하량의 할당 및 오염부하량 관리	현행과 같음	협의 사항은 유지
협의 요청 기관	개발사업의 승인·허가 등의 기관	현행과 같음	협의 요청 주체는 유지
협의 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강원자치도지사	국가 환경기관과의 협의를 도지사와의 협의로 변경
검토 내용	배출부하량 산정,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가능 여부, 삭감계획의 적정성 등	도지사가 협의 과정에서 검토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 검토 기능을 도지사에게 이양
제도적 효과	환경영향평가와 오염총량관리 협의가 각각 이루어질 수 있음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와 오염총량관리 협의를 함께 수행	관련 절차의 일원화 및 사업 추진의 신속성 제고 기대

즉, 강원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추가 수질오염부하량의 할당·관리도 검토하도록 하여, 관련 협의절차를 일원화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다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제도인 동시에, 상·하류를 포함한 수계 전체의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상류지역인 강원자치도에서 지역개발부하량이 과도하게 할당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관리가 미흡한 경우, 하류지역의 상수원 수질 및 수계 전체의 목표수질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행 제도는 이러한 수계 전반의 수질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의 승인·허가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과정에서 배출부하량 산정내역,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및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시·도 단위가 아닌 상·하류 수계 전체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제도인 만큼, 지역개발사업별 오염부하량 할당의 적정성 협의는 국가가 수행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후부는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부하량 산정 및 삭감계획을 시·도에 맡길 경우 상류지역의 관리 미흡이 하류지역 상수원 수질 및 지역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행 국가기관 협의체계를 유지하고 신설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개발사업 관련 협의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될 수 있으나, 현행 지방환경관서의 협의·검토 기능을 도지사 협의로 대체하는 경우 수계 전체 차원의 통일적 수질관리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의 내용은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384호)에 포함되었던 조문과 유사한 것으로, 해당 조문이 2026년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8.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진흥(제4편제4장)

(1)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제73조의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 육성, 문화예술시설 확충, 전통·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및 문화예술 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예술의 발굴·진흥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현 행	개 정 안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⑤ 국가는 강원자치도 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강원자치도의 문화예술·문화산업·전통문화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진흥계획 중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시행계획[209]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행계획으로 보도록 한 것은, 관련 계획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계획 수립과 관리의 중복을 줄이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49조에 유사한 입법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특별법 간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9)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2)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제73조의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강원자치도 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3(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 「지역문화진흥법」은 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10]

개정안은 이러한 지정·취소 권한을 강원자치도에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수요와 정책 여건에 맞는 문화진흥 거점기관을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국가 지역문화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강원자치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거점 조성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지역특별법상 문화자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50조에도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 지역특별법 간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210)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의4(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을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지정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제73조의4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 도시공원 내 교양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지정된 문화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4(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 2.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교양시설이 설치된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지역문화진흥법」은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이 밀집된 지역,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및 문화자원 또는 문화적 특성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11] 또한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211)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12]

따라서 문화시설 집적지는 현행법상으로도 문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고, 군사시설 이전부지 및 도시공원 내 교양시설 설치 지역도 문화적 특성 및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을 갖춘 경우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 제1항은 현행 제도상 지정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확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조례 제정, 문화지구관리계획 수립 등 현행법상 지정·관리 절차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특례의 범위를 지정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지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213] 및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4]에 유사

---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12)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1조(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
2.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교양시설이 설치된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지원의 필요성·범위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제73조의5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5(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수 있다.

214)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48호)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하고, 협의를 마친 시·도지사는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을 사전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15]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도 시·도지사가 설립타당성에 관한 자체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실질적인 특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면제하고,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지역의 문화수요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립 필요성, 운영계획, 재원조달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특례를 수용하는 입장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문화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객 특례(제73조의6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특구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6(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객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특구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강원특별법 제44조의2는 같은 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자유무역지역,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216]

---

216) **「전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지구·단지·지역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2.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3. 강원자치도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4. 강원자치도에 있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② 제1항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마다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 10. 22.] 제44조의2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63조[217]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기존 외국인 체류 특례의 적용 대상을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체 종사 외국인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사증 및 체류기간은 법무부장관의 관리사항인 만큼, 이러한 특례를 통하여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체 종사 외국인에 대한 특례는 제44조의2의 외국인 체류 특례와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하므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조문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보다 간결하고 명확할 것으로 보임.

(6)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제73조의7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강원자치도가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3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특구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7(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유지·보존 및 계승·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강원자치도는 향토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향토문화의 보전·활용과 지역관광의 진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바,[218] 개정안은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조성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근거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향토문화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유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고,[219] 문화체육관

---

218)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2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향토문화의 발굴·유지·보존 및 계승·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향토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광부도 해당 특례를 수용하는 입장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향토문화와 관광자원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7) 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제73조의8 신설)

개정안은 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8(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시설·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관광 인프라는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더불어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반인바,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은 강원자치도의 문화·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특례를 두는 것은 지역특별법 간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제73조의9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강원자치도가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9(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세계 한류 역사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류 콘텐츠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및

관련 시설·사업의 추진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관광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법」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설치·관리 및 관광지·관광단지·관광시설의 설치·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강원자치도가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조사·연구, 문화예술·관광사업의 육성 및 시설·공간 조성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 및 지역 주도 발전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지원의 주체를 통합특별시장으로 정하고 있음.[220] 이에 비추어 국가에 적극적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개정안은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적극적 노력 의무 및 지원 규정을 도지사의 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

2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1조(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①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가 마한·후백제·가야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마한·후백제·가야의 역사문화 조사·연구, 공연·역사·전통·문화예술·관광사업의 육성 및 국민 역사문화 향유를 위한 시설·공간 조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 역사문화특구의 지정(제73조의10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역사적 정체성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일정 지역을 역사문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국가유산·전통문화의 보전·전승, 무형유산·전통예술·민속문화의 활성화 및 역사문화 기반 관광·교육·연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0(역사문화특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역사적 정체성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역사문화거점으로서 강원자치도 내 일정 지역을 역사문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특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존·전승 2. 역사문화 자산과 그 정신적 가치의 보호 및 활용 3. 무형유산·전통예술·민속문화의 집적 및 활성화 4. 역사문화 기반 관광·교육·연구 기능의 강화 ④ 역사문화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강원자치도의 역사·문화자원과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고, 이를 관광·교육·연구 기능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 관련 정책 및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221] 강원자치도에도 역사문화특구 지정의 근거를 두는 것은 지역특별법 간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역사문화특구에 대한 특례(제73조의11 신설)

개정안은 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2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2조(역사문화특구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사적 정체성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역사문화거점으로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일정 지역을 역사문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존·전승
2. 역사문화 자산과 그 정신적 가치의 보호 및 활용
3. 무형유산·전통예술·민속문화의 집적 및 활성화
4. 역사문화 기반 관광·교육·연구 기능의 강화
④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1(역사문화특구에 대한 특례) ① 강원자치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특구의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는 역사문화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역사문화특구에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국가유산의 보존·활용, 전통문화의 전승, 문화관광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음.[222]

다만, 제1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례

2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3조(특구에 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는 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특구에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 법령 및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국가유산 관련 규제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특구 조성의 필요성만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면, 대상 행위와 적용 요건, 문화유산 보전조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2항은 특구 조성·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사용·수익허가 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고, 도지사에게 국유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은 없음.

따라서 제2항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는”을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는”으로 수정하여, 국유재산은 국가가, 공유재산은 강원자치도가 각각 권한 범위에서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권한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으므로 도지사에게 이를 부여하는 현행안은 보완이 필요하고,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병행하되 공익성, 특례 요건의 명확성, 다른 재정지원 수단과의 비교 필요성 및 적정한 존속기간 등 법정 특례 신설 기준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역사문화지구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는 공공성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1)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2 신설)

개정안은 강원 내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강원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2(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과학기술·디자인·문화예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

현 행	개 정 안
	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는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223] 및 전북·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1항과 제2항은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

2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4조(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과학기술·디자인·문화예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산업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고 보임.

제1항의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은 “복합기술” 및 “연구개발업무”의 범위가 추상적이므로,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 분야와 사업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학기술단지”는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 기업 유치 및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공간적 범위가 되나, 현행 강원특별법 및 개정안에는 그 개념·지정 주체·지정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과학기술단지의 대상 지역, 기능 및 지정·조성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기존 법률상 산업기술단지 또는 산업단지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2항의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은 현행 법령에 통일된 정의가 없는 기술·정책 용어로서, 현행 법체계상 그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장래의 기술 발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소지가 있음.

따라서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의 범위와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고, 법률 차원에서 최소한의 개념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제3항은 과학기술단지 내 특정 유형의 입지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세 관계법에 감면 근거가 규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는바, 해당 조항에서 지방세 감면 가능성을 명시하더라도 실제 세제 특례를 창설하는 효과가 없어, 별도로 명시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임.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세 감면 특례는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규정할 수 있어 개정 실익은 없는 반면, 일반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넷째, 제4항의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운영 규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의 유예·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제자유특구 제도하에서도 강원자치도는 특정 분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새로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다시 선언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특례로서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12)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제73조의1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재정·세제 지원,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단지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3(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① 도지사는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는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224] 및 전북·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특례를 강원자치도에도 적용하여, 콘텐츠와 관광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개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별 조항의 명확성과 실익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제2항의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제한 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이 조항은 기존 제도 하에서 허용되는 재량을 재확인하는 데 그쳐,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과 이스포츠 경기장·영상 제작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의 건립 및 국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 "도지사가 시설을 건립하고 국가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두 조항을 구분하여 열거할 실효성은 크지 않아 단일 조항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5조(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셋째, 제5항은 안 제1항의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연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경제자유구역 제도 자체에 이미 다양한 조세·입지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고 지방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근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세 감면 특례는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규정할 수 있어 개정 실익은 없는 반면, 일반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종합하면, 제46조의3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 및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강원자치도의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제도 간 연계 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서 수용 가능성은 있으나, 현행 국토계획 관련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지방세 특례 제도 등에 기 규정된 사항을 재서술하는 조문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13) 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제73조의14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연안 지역에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 개발사업의 환경성 검토 및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를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4(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① 도지사는 연안의 고유한 생태·문화를 활용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 내 개발 사업의 환경성 및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경 복원 및 생태계 보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는 도서·연안 개발에서 환경·국가유산 관련 규제가 중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절차를 통합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98조[225]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2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8조(도서·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 지역 및 연안의 고유한 생태·문화를 활용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 내 개발 사업의 환경성 및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경 복원 및 생태계 보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은 도지사 주도로 구성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와 방식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도서·연안 관광개발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영향진단 외에도, 사업의 위치·규모·내용에 따라 국토계획·건축, 공유수면·해양공간·연안관리, 항만·어항 등 다양한 인허가와 협의 절차가 수반될 수 있음.

그럼에도 제2항은 “환경성 및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만을 대상으로 의제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환경영향평가법」 및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협의·사전영향협의 절차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령상 인허가·협의까지 포괄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의제 대상이 되는 절차의 범위를 관련 법률상의 구체적인 협의 절차로 명확히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통합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로만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 공무원이 해당 기관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지, 위원회 심의 결과가 해당 기관의 공식 협의 결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가 조문상 명확하지 않음.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절차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방법(참여 기관 및 직위), 의결 구조

등을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각 기관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생활환경 개선 및 경제진흥 등(제4편제5장)

(1)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제73조의15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5(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강원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 제49조제1항은 의료법인이 의료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의료인·의료관계자 양성 및 보수교육, 의료·의학 관련 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례식장·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이용·미용업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음.[226]

226)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은 이러한 일반법 체계와 별도로, 강원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에 한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제주특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같이[227] 지역 여건을 반영한 부대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동일한 내용의 특례가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다른 일반 시·도에 소재한 의료법인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제73조의16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에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 개선, 농촌 및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 향상,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체계 구축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2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6조(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0조(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6(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및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의 실질적인 개선과,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체계 구축하는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 설치·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조직 및 운영,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공공의료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 및 도조례에 근거하여도 설립·운영이 가능하므로,[228] 안 제83조의3이 공공의료재단 설치의 허용 여부를 새롭게 창설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229]와 같이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법률 차원에서 공공의료재단의 설치·운영 근거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22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1조(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주민의 건강 증진, 보건의료 여건 개선, 농촌 및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의 실질적인 개선,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체계의 구축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조직 및 운영,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조례 위임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공공의료재단을 통한 광역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강원특별법상의 정책과제로 보다 분명히 설정하는 데 의의가 있는 특례로 이해되며, 현행 제도 및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3)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제73조의17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자치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7(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출산율 제고와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모자보건법」제15조의17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230]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가능성과 조례 위임 근거를 새롭게 창설하기보다는, 강원자치도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확충 및 운영 필요성을 특별법상 과제로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231] 개정안은 지역특별법 간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제73조의18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

230)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2조(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국가가 응급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 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8(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지원 4.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

현행 공공보건의료법 제1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하여 보건의료 인력 공급, 의료기관 설립·운영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3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 제83조의5 각 호에서 열거한 지원 내용은 의료취약지·응급의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시행 중인 사항을 강원 응급

23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의료취약지에 관하여 특별법상으로 재확인하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이미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233] 지역 특별법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5)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제73조의19 신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분만·소아·정신 등 필수의료체계,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역의사 및 공중보건의사 인력, 지역암센터 등을 공공의료 인프라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강원자치도가 그 확충·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19(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인력·사업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

2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4조(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지원
4.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

현 행	개 정 안
	관 및 책임의료기관과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연계체계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이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의료환경 개선 사업 3.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증·응급·분만·소아·정신 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별 전문의료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난·응급 의료,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병원 및 관련 기반시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안정화 및 장비·인력 확충 기반 사업 6.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생활기반 등 지원 사업 7.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편입·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8.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소재 지역암센터의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②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도내 관할 지역에 제공되던 응급·필수·공공 의료 관련 국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현 행	개 정 안
	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의사·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원자치도는 의료취약지 및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에 대응하고,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와 응급·분만·소아·정신 등 필수의료의 지역 내 제공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등의 범위와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24조에 공공의료 인프라등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유사한 입법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재정지원의 범위 및 우선지원 기준 등과 관련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용 가능성이 있어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는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가 기반시설 조성뿐 아니라 제도 및 프

로그램 운영까지 확대됨에 따라, 의료취약지 병원 운영비 및 지역의사·필수의료인력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6)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제73조의20 및 제73조의21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모집 기부금품의 별도 계정 관리, 기부 강요 및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모금 금지 등을 규정하고,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정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운영성과 평가 및 존속기한 연장·폐지 의견 통보 절차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0(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① 강원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현 행	개 정 안
	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료원은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부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에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21(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73조의20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73조의20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전북특별법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과 동일한 취지와 내용의 특례로서,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제공 및 재정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기부금

품의 별도 계정 관리와 기부 강요 금지 규정을 두고, 특례의 적용기한 및 운영성과 평가 절차를 함께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특례의 상시화에 따른 공공부문 모금 질서 저해 또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특례의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7) 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제73조의22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음성·동작·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자치도 관할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2(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①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음성, 동작,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불편함이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 등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접근성 기준 준수,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 제공,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도입, 인공지능 기반 수어 안내 서비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보급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유사한 취지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고,[234] 제주특별법 및 정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인공지능·디지털 포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정책적 당위성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인공지능 약자에 대한 지원은 특정 지역의 개별 사정이 아닌,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전반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적 정책과제라는 점에서, 기본 방향과 핵심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등 일반법 체계 내에서 통일적으로 정립·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 보임.

이러한 사항을 개별 지역 특별법에 분산·중복하여 규정하는 방식은,

---

2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3조(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①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음성, 동작,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포용 및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의 기본 원칙을 일반법에서 일관되게 설정하려는 최근 입법 흐름[235]과의 정합성, 일반 시·도 거주 장애인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의 제목은 “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으로 되어 있으나, 조문 내용에는 인공지능 약자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에는 조문 제목에서 “교육”을 삭제하거나 본문에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교육·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제73조의2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235) 뉴시스, “‘전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디지털포용법 국회 통과”, 2024.12.2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6_000301146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2026.01.2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863&tag=&nPage=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3(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조직, 인력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는 현행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고, 지자체 내부 전담조직 설치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등을 통한 통합 신고·조정 창구 운영도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현이 가능한바, 안 제83조의5가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설치·운영을 새롭게 허용하는 특례라고 보기는 어려움.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동일한 내용의 특례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236]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폭력·학대 신고·대응

2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3조(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

기능을 통합하는 센터 설치·운영 근거와 행정·재정 지원 의무, 조례 위임 사항을 특별법 차원에서 명시하는 것은 지역 특별법 체계의 정합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라는 정책 목표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9)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제73조의24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강원자치도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해당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행정 지원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4(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지원, 행정 지원 및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조직, 인력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을 수립·조정·추진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237]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일자리, 창업, 주거, 문화 등 청년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청년정책의 근거를 특별법 차원에서 명시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가시성과 추진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구조의 청년특화구역 조성·지원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238]을 고려하면, 강원특별법에 유사한 조항을 두는 것은 지역 특별법 간 통일성과 청년정책 분야에서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237)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8조(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청년특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제73조의25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출산장려, 인구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간소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5(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출산장려 및 인구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간소화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그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39]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시행하여 사전컨설팅 확대, 신속협의 도입, 협의 제외 대상 확대 등을 통해 협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협의

23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수의 약 60%가 신속협의 또는 협의 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240]

출산장려, 인구부양, 돌봄 관련 사업은 지역별 인구구조와 생활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정책 설계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협의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유사 입법례[241]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원특별법에 유사한 특례를 두는 방안은 수용 가능성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이 규정하는 “협의절차 간소화 요청”의 상대방, 요청 내용, 처리기준 및 법적 효과가 조문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제도에서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절차의 신속화 및 협의 제외 대상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특례가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추가적 효과를 갖는지, 그리고 특별법상 별도의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도개편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4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자체 복지사업, 더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된다”, 2026.1.2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741&tag=&nPage=1

2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8조(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출산장려 및 인구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간소화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1) 강원자치도 돌봄특구 지정(제73조의26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영유아·아동·장애인·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특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6(강원자치도 돌봄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강원자치도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④ 도지사는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통합돌봄의 범위를 영유아·아동까지 확장하고, 유치원·학교가 제공하는 돌봄과 지역 돌봄서비스 간의 연계·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돌봄특구 특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242] 강원자치도에 대해서도 돌봄특구 지정 및 특별회계 설치,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특별법 차원에서 명시하는 것은 지역 특별법 간 일관성 및 형평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12)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제73조의27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1인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 운영·관리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0조(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통합특별시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7(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1인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도민의 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조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운영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과 돌봄·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결합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주거 수요에 맞추어 주거와 비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243] 강원특별법에 이와 같은 특례를 두는

2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7조(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1인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청

것은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제3항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조건, 제공 서비스의 품질기준 및 운영기관의 선정·평가·관리 등 주요 사항을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점을 고려하여, “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한편 입주 자격 및 임대조건 등은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기본사항으로서 주거정책의 통일성 및 다른 공공임대주택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3항 후단에서 도조례 제정에 앞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문언상 장관의 동의가 조례안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지, 입주 자격·임대조건 등 일정한 사항에 한정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조례의 내용 전반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장의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과의 관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으

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조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운영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므로,[244] 사전동의 절차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을 입주 자격 및 임대조건 등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통일성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3)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특례(제73조의28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8(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44)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15조에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원자치도의 지역 여건과 투자유치·산업육성 수요를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1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73조의29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전력·용수·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및 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9(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현 행	개 정 안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력(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50조에 개정안과 동일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원자치도의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투자유치 및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전략산업의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및 전문인력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국가 재정지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정책과 한정된 기반시설 투자재원 배분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인 만큼,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및 일반 시·도와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음.

(15) 반도체·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제73조의30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강원자치도의 반도체 및 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의 확보 및 반도체산업과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30(반도체·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반도체 및 방위산업과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반도체, 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관할 구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반도체 및 방위산업은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력 및 산업기반 확충이 필요한 분야임. 이러한 산업 간 연계를 통하여 첨단기술의 사업화와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51조에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수

용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국가 지원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방위산업 육성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6)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제73조의31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도지사가 국방특화 클러스터의 확대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융자 등 인센티브 제공, 특별기금 설치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정책 연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31(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① 국가 및 도지사는 국방특화 클러스터의 확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국방특화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국방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강원자치도의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서, 국방 관련 기업·연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기반 조성이 필요함. 이러한 점에서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62조에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 지원은 국가 방위산업 육성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7) 푸드테크산업 관련 특례(제73조의32～제73조의36 신설)

개정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푸드테크산업법”)에 따른 국가 차원의 푸드테크산업 정책 체계 하에서 강원자치도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반영, 혁신클러스터 지정, 실태조사·통계, 지원 권한 이양, 규제개선 요청권 부여 등을 통하여 강원을 푸드테크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32(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강원자치도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그 밖에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33(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국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강원자치도에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34(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35(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 설>	제73조36(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현 행	개 정 안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먼저 **제73조의32**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강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 동향 및 발전 전망, 통계, 연구개발, 전문인력,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중장기 전략 단계에서부터 강원자치도에 대한 별도 과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조항임.

이를 통하여 강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조례에 근거한 세부 집행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73조의33은 푸드테크산업법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강원자치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강원이 농식품·관광·외식·물류 등 기존 강점 산업과 푸드테크를 결합한 테스트베드·실증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은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기업 집적을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므로, 강원 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73조의34는 도지사가 푸드테크 분야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푸드테크산업 정책 설계와 성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도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어 보임.

이는 푸드테크산업법에서 규정한 국가 실태조사·통계 체계를 강원자치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 범위와 방법을 도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조사·통계 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적절한 측면이 있음.

제73조의35는 푸드테크산업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창업 및 금융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장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에 규정된 정부의 지원 권한을 강원자치도의 권한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창업보육·연구개발·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자치분권 및 산업정책의 현장 밀착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73조의36은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법상 규제개선 조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직접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강원 푸드테크 기업·실증사업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를 중앙 규제심사 시스템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푸드테크산업이 신기술·신서비스를 포함하는 융복합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개선 절차에 대한 도지사의 직접 접근권 부여는 선제

적인 규제혁신과 실증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제73조의32부터 제73조의36까지는 국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체계 안에서 강원이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반영, 혁신클러스터 지정, 실태조사·통계, 지원 권한 이양, 규제개선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선행 입법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245]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강원 푸드테크산업의 자율적·체계적 육성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2조(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통합특별시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그 밖에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73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국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통합특별시에 지정할 수 있다.

제274조(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75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의 권한으로 한다.

제276조(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8)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73조의37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제15조[246]에도 불구하고 강원 관할구역 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육성지구 운영과 관련된 일부 장관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37(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내 관할구역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본다. ③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4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현 행	개 정 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스마트농업법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247]과 같이 강원에 대해 조성계획 수립·고시 및 지구 운영 관련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과 운영을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분권적 특례로 보임.

또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 시 농업기반시설,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지원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재정지원 체계와의 연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맞춤형 스마트농업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9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③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9)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제73조의38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둘 이상의 시·군 또는 복수 지역을 하나의 해양치유지구로 통합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통합 지정된 경우 도지사가 지역별 자원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담 및 연계개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38(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해양치유산업의 광역적 연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역이나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해양치유지구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지역이 하나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각 지역별 자원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담 및 연계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자원의 여건, 공익성, 지정 규모의 적정성, 수요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83조에 개정안과 동일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73조의39 신설)

개정안은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산자·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39(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내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자치도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사용료

현 행	개 정 안
	3. 기타 기부금 및 후원금 등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비용 절감,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매시장 등 유통시설의 기능을 효율화하고 지역 간 유통망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또한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정책 및 지원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유통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85조에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1)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제73조의40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의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관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40(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 수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와 품질·안전성 관리, 물류 및 수출기업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현행 제도에서도 정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조직화·생산관리 및 유통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92조에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2)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제73조의41 신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중 농촌·해양 등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의 관광산업을 우선 육성하고, 문화·체육·유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41(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 등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유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인구감소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정주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생활인구와 방문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바, 지역별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기반 확충을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60조에 개정안과 동일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23)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제73조의4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적정성을 분석·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42(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조정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사업 간 유사·중복성, 사업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조정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개정안은 강원자치도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89조에 동일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어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이 특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협의·조정 결과와 달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4)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제73조의4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도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4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치유

현 행	개 정 안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지역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제도적 여건, 지역 특성과 치유관광산업 간 적합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제2항은 강원자치도 내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대상으로 법정 기준에 따라 관광자원, 발전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따라서 강원자치도의 신청만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지정체계의 객관성과 국가 치유관광정책의 일관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

정할 예정인바, 강원자치도에 대한 우선 지정 특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5)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제73조의44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의료연구개발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도내 일정 지역을 강소형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기업 지원, 지원조직 설치, 국가와 강원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44(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국가의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내 일정지역을 강소형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이하 이 조에서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라 한다) 조성할 수 있다. 1.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2.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3. 도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 정도 4. 부지 확보의 용이성, 접근성 5.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6. 도내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또는 해외수출 실적 등

현 행	개 정 안
	7. 지역에 조성된 바이오, 의료산업 기반 및 인프라 구축 정도 8. 첨단의료복합단지로서의 발전가능성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첨단의료산업진흥지원조직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성과의 활용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의료연구개발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과 규제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적용한다. ④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첨단의료산업은 연구인력·의료기관·연구개발기관·기업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이 중요한 분야인바, 지역의 바이오·의료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등 특화 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정주 가능성,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부지 확보의 용이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등 법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는 국가 단위 사업임. 현재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의 2개 단지가 조성·운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상 “강소형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가 지정하는 법정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국가 지원의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국가 단위 지정제도와의 관계 및 법적 성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지역별 추가 지정을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입법 요구를 유발하고,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정책 및 지역 간 형평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은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부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특별법상 별도 근거를 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정 요구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6) 혁신형 의료기기 지원 특례(제73조의45 신설)

개정안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45(혁신형 의료기기 지원 특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 개념은 “혁신형 의료기기”가 아니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및 “혁신의료기기”임. “혁신의료기기”는 첨단기술의 적용 또는 사용방법 개선을 통하여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보다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하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연구개발 및 글로벌 진출 역량 등이 우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을 의미함.

한편, 같은 법 제18조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건폐율·용적률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임. 따라서 이는 혁신의료기기의 지정·허가에 관한 권한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시설 설치에 관한 건축규제 특례와 관련된 사항임.

따라서 조문 제목과 내용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연구시설 설치 특례” 등으로 정비하고, 이양하려는 구체적 권한 및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의료기기” 정의가 불분명하고, 「의료기기산업법」 제18조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특례이므로 조항 제목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7)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기준 등에 관한 특례(제73조의46 신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강원자치도 내에서 발주하는 국가정책사업 중 지방비 투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및 지원위원회 심의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계약처리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46(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강원자치도 내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현 행	개 정 안
	도지사는 계약처리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 자격 기준 등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정책사업 중 지방비 투입사업 2.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3.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지역발전에 기여 등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의 종류, 목적물, 사업명, 장소, 사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강원자치도와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처리의 기준과 입찰참가 자격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76조의 발전협의회에서 미리 협의를 할 수 있다.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지역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현행 공공기관 계약제도에서도 일정한 공사·물품·용역계약에 대하여 사업 현장 또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은 공

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그 제한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한 입찰참가자격의 설정·완화와 직접 관련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계약은 공정경쟁, 계약상대자의 적정한 선정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므로, 도지사의 요청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경쟁 제한과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또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범위, 적용 기준 및 절차를 객관적으로 정하고, 국가계약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계약규칙과의 정합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2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제73조의47 신설)

개정안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가 없는 읍·면·동 지역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영업시간 기준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47(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약사법」 제44조의2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약사법」 제4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2. 6시부터 24시까지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출 것 3. 「약사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현행 「약사법」 제44조의2제2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매업 경영, 판매자 교육 이수 및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구비 등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는 강원자치도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등록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시간 완화의 필요성,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위해의약품 회수체계, 지역약국과의 관계 및 지역별 접근성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법상 개별 특례로 규정하기보다는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도 지역 주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24시간 연중무휴 등록기준은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지역약국 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된 것이므로, 예외 허용 여부는 특별법 특례보다 「약사법」 개정 논의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심야약국 및 특수장소 지정 등을 통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임.

(29) 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제73조의48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시범지구 내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48(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창업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공간, 투자·보육, 연구개발 및 판로 지원 등이 연계된 창업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창업기업의 집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제도도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창업자·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을 집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04조에 개정안과 동일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0) 미래산업 산학협력 촉진(제73조의49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산학협력 관련 기관·지원시설의 집적, 관련 기업의 입지 또는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강원자치도가 인력양성, 연구개발·사업화, 기술이전·산업자문 및 인력·시설·장비 등의 공동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49(미래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 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4.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학협력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연구개발과 사업화,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미래산업 분야에서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05조에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1)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제73조의50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동혁신과 공간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50(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모빌리티 미래도시”는 개별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라기보다는, 자율주행, UAM, 전기·수소차, 모빌리티 서비스 등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 인프라를 집적·융합한 복합 도시개발·산업클러스터 개념으로 이해되며,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248]과 전북·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동일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강원자치도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은 강원자치도를 모빌리티 미래도시 후보지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도시·교통·에너지·산업정책, 재정지원 및 규제특례 도입 과정에서 정책적 우선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전남광주·제주·전북과의 형평성과 특별법 간 체계 정합성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2)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제73조의51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강원자치도 관할 내 복수의 산업단지·연구단지·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국가 지원, 클러스터 관련 인허가 협의기한 단축, 통합창구 설치, 재정·금융지원 및 규제개선 요청의 신속 처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클러스터 형태로 육성하려는 것임.

---

2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2조(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51(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도내 관할구역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강원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이 조에서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3조의50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자동차·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소재·완성품 제조기업 간 공동 개발·생산·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제 품질인증·표준화 지원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국가는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249]과 제주·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동일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은 이러한 특례를 강원자치도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제2항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혁신법")에 따라 지정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전반을 대상으로 국가가 규제특례,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강원 소재 특화도시에 한정된 개별 특례라기보다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제도 전반에 관한 운영원칙을 선언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됨.[250]

---

2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3조(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전남광주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이 조에서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52조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자동차·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소재·완성품 제조기업 간 공동 개발·생산·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 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제 품질인증·표준화 지원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국가는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50)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산업육성

이와 같은 사항은 모법인 모빌리티혁신법의 체계 내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보다 적절하고,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법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둘째, 제3항은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미회신 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제1항의 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이 어떠한 개별 법률의 사업 등과 연계되는지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인허가 협의 기한 단축 및 미회신 시 협의완료 간주를 규정하는 것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인허가 절차와 법적 근거를 해석으로 보완해야 하는 여지를 남기므로, 그 범위와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제5항은 국가로 하여금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지원 및

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규제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항에 따른 클러스터는 도지사의 자체 지정에 기초한 정책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조문이 어떠한 개별 법률상의 지원·규제완화 제도와의 관계에서 “타 법령에 우선하는” 검토 의무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모빌리티 관련 일반법상 제도와의 관계, 특례가 적용되는 인허가 절차 및 지원·규제개선 제도의 범위, 관계 법령에 대한 우선 적용의 의미와 법적 효과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특례의 대상·요건·절차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3)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52 신설)

개정안은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상 규제 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신청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특

례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52(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같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항·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위 개별 법률들은 각각 모빌리티 특화도시, 스마트도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실증 등의 분야에서 규제 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 신청의 접수, 심의, 특례 부여 등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권한 중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251] 및 제주·전북특별

2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4조(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동일한 특례가 반영되어 있어, 강원자치도에서도 유사 특례의 도입을 통해 규제 대응과 실증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같은 권한 위임 특례는 지역 현장과 밀접한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규제 신속확인과 특례 신청 절차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제도의 성격과 운영방식, 권한을 보유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4)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제73조의5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및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국가가 해당 특화단지와 공급망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같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53(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특화단지 지정, 공급망센터 지정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252] 정부도 2021년 이후 소부장 특화단지를 순차적으로

25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의3(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확대하고, 공급망센터를 통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조기경보 체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253]

이러한 점에서 강원자치도가 관할구역 내 소부장산업을 위하여 특화단지·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정 및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국가 소부장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소부장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통합특별시장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우선 지정 및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바,[254] 강원특별법에 유사한 규정을 두는 것은 소부장 특화단지 및 공급망센터 유치·지정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253) 뉴스1, "'소부장 특화단지' 2030년까지 10→20개 확대, 기업투자 30조 유치", 2025.10.23. https://www.news1.kr/economy/trend/5951600

2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8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5)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제73조의54 신설)

개정안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5조를 전제로, 강원자치도의 녹색산업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화·실증화 등에 대하여 국가와 강원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54(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1.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②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녹색산업등(이하 이 조에서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 4. 그 밖에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집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

현 행	개 정 안
	부장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실증화·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기보다는, 현행 일반법상 녹색융합클러스터 제도를 강원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추어 보다 구체화하려는 특례로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동일한 내용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255] 강원특별법에 유사 규정을 두는 것은 녹색산업 육성

2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9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1.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녹색산업등(이하 이 조에서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
4. 그 밖에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집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과 관련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특례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되, 제1항에 청정대기산업클러스터와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클러스터를 열거하는 방식은 조문 제목과 달리 적용 대상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특정 유형의 열거를 삭제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반의 조성 근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상 클러스터의 조성·운영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제3항의 재정지원 주체도 국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국가 및 강원자치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6) 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제73조의55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신산업 금융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강원자치도 내 우선 설치를 지원하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55(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

현 행	개 정 안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신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투자공사가 도내 관할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70조[256]와 동일한 특례를 강원특별법에 도입하는 것으로, 강원자치도의 벤처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의 정책금융·지역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등 현행 법체계상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설립 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등 일반법상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257][258]

---

2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0조(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신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투자공사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5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5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5항에 따른 조례

따라서 제1항은 문언상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곧바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타당성 심사 절차가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행 일반법 체계 안에서 설립 근거를 보강하는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큼.

이러한 점에서 제1항은 실질적인 절차 특례라기보다는 개별 일반법상 가능한 내용을 선언적으로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개정의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임.

제2항은 정부에 대하여 지역투자공사의 강원 내 우선 설치 지원과 설립·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강원자치도가 지역투자공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협조와 제도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우선적으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이라는 표현 역시 다소 포괄적이어서 중앙정부의 재량과 역할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거나 불명확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또한 이러한 조문은 향후 다른 시·도의 유사한 입법 요구를 촉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7)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제73조의56 신설)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에서 학교·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강원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강원자치도 생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56(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서 학교·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 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강원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역산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88조에도 개정안과 유사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어,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간 제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은 “강원자치도에서 학교·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 및 납품 노력의무도 강원자치도 내 학교·공공급식 등을 위한 구매에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항부터 제5항에도 적용 지역 및 대상 사업을 명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8) 귀농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제73조의57 신설)

개정안은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취업·창업, 정주여건, 능력개발 및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57(귀농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 정착은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청년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현행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 임시거주시설, 창업·주택자금 융자 및 소득창출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89조에 개정안과 동일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9)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제73조의58 신설)

개정안은 지역 청년의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확충, 주거공간 지원 및 기초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 유입·정착을 위하여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58(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2.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집회 시설 확충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청년유출을 막고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문화·여가 및 생활서비스 기반을 함께 확충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청년기본법」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고용·창업, 주거, 문화활동 등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25조에도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40) 대중교통 운영 지원(제73조의59 신설)

개정안은 국가가 강원자치도 내 벽지 노선 대중교통의 운행손실 일부와 도지사가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철도 노선의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도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59(대중교통 운영 지원)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도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내 관할지역을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다

현 행	개 정 안
	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유지하여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되는 비용 ④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대중교통·철도서비스 유지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편의와 지역 간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바,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공익목적의 철도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운임 감면액, 벽지 노선 또는 역의 기초 철도서비스 유지에 따른 경영손실 및 국가 특수목적사업 수행 비용을 공익서비스비용으로 규정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34조에도 벽지 노선 대중교통 지원 등

개정안과 동일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개정안이 준용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입법 취지 및 재정지원 체계가 상이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1) 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제73조의60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교통물류거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60(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교통물류거점에 항만이 포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거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산업

단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여객·화물의 연계운송, 환승, 환적, 하역 및 보관 등의 교통물류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물류거점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1종 교통물류거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제2종 및 제3종은 시·도지사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자체 지정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개정안은 기존 지정 절차를 배제하거나 지정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요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강원자치도의 교통·물류 여건과 지역발전 수요를 국가계획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35조에 개정안과 동일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및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42)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제73조의61 신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전환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조건,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61(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

기 위한 핵심 과제인바,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38조에 개정안과 동일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43)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제73조의62 신설)

개정안은 군 공항이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도의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62(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강원자치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 도조례

현 행	개 정 안
	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사업 시행자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 군 공항 건설비를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자치도가 자체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전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 수용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도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제3항은 이전주변지역의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

한 특례로서 의미가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46조에도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자체 재원 보조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에 관한 유사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44) 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원 등(제73조의63 신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가 도내 국제공항 및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한 공항경제권 조성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의 협력 및 지원,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63(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도내 국제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이하 “공항경제권”이라 한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공항경제권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강원자치도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

현 행	개 정 안
	성화를 위하여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항과 주변지역의 물류·산업·관광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항공수요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47조에도 무안공항 및 주변지역의 산업생태계 조성과 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공항경제권을 공항 및 공항구역과 연계하여 물류·산업·관광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집적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법정 절차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27년 5월 13일 시행될 예정임. 이에 개정안의 “공항경제권” 정의는 현행 문언처럼 산업생태계 자체를 의미하는 방식보다, 해당 법률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도 공항경제권은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용어와 정의가 통일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5) 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73조의64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역별 의료자원의 특성에 따라 첨단의료권, 한방치유권, 산림치유권, 해양치유권 및 웰니스의료권으로 구성된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육성하고, 특구 내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환자의 입국·진료·요양·관광·출국 과정과 환자·보호자의 장기체류 비자 발급 관련 행정편의를 통합 지원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64(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1. 첨단의료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AI) 기반 정밀 의료, 중증 질환 치료, 뷰티(이용업·미용업과 피부관리, 헬스케어 등 이와 관련된 서비스, 화장품·미용기기 등을 이용한 서비스, 그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성형 2. 한방치유권: 「의료법」에 따른 한방 의료 또는 재활 의학을 통한 치유 3. 산림치유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치유 4. 해양치유권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양치유 5. 웰니스의료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유농업자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유관광자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통합

현 행	개 정 안
	·연계한 치유 ③ 도지사는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내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지역의 의료·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도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 관련 편의 제공을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97조에도 첨단의료권, 웰니스의료권 및 산림치유권을 포함하는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육성 및 국제진료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치유관광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활동으로서, 질병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과는 구별되는 개념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치유관광을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점에서 웰니스의료권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유관광자원”을 포함하는 것은 의료관광특구의 성격과 맞지 않고, 산림·해양치유자원은 이미 각각 산림치유권 및 해양치유권에서 포섭되고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제73조의65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강원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주말시장 지원,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육성, 청년상인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6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현 행	개 정 안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10.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도내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원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전통시장 인정,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권활성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강원자치도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근거와 국가 지원 가능성을 특별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강원특별법상 정책과제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동일한 구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259] 강원특별법에 유사

조항을 두는 것은 전통시장·상점가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 간 형평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전통시장법 제6조제1항[260]에 따라 시·도가 수립하는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과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상·내용 및 수립 절차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기존 지원계획에 개정안의 사업 내용을 반영하거나 두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7) 국유지·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제73조의66 신설)

개정안은 제73조의65에 따른 시장 내에서 공동시설 설치 및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국유지·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66(국유지·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도지사는 제73조의65의 시장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2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7조

26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등에 공동시설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을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은 80퍼센트,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은 8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지원 대상 및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은 상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48조에도 동일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어 지역특별법 간 정합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행정안전부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는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48)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특례(제73조의67 신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시장·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67(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특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장·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기준을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권 규모, 상권 구조 및 유통환경을 반영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지역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권 규모·상권 구조 및 유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벌칙(제6편)

(1) 국제학교에 관한 벌칙(제83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국제학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국제학교의 설립·변경·폐쇄 및 청산 과정에서 승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3조의2(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48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5. 제48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학교의 재산을 해당 국제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한 자 ② 제48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변경승인을 받는 행위,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하는 행위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제학교의 무단 설립·운영 또는 무단 폐쇄는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비 반환 등 재산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 취득 및 청산절차 위반은 승인제도의 실효성과 학교재산의 독립성·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제학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위와 같은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징역형의 상한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벌칙과 동일하게 정하면서도, 벌금형의 상한은 제1항의 경우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제2항의 경우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낮게 정하고 있음.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은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 원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응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국제학교 제도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제학교의 운영 주체, 학교재산의 성격, 학생 보호의 필요성 및 외국교육기관과의 제도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외국교육기관 특별법보다 낮은 벌금형을 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한 차별화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용법의 벌칙 수준에 맞추어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338